

9

백년가게 육성사업

사업목적

- 지속가능한 경영을 하고 있는 우수 소상공인(소기업)을 발굴하여 추가 성장을 지원하고 성공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사업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도소매 · 음식업종에서 30년 이상 사업을 운영해오고 있는
우수 소상공인 및 소기업
- 시행시기 : '20. 2월 ~ 11월말 (연중 수시신청)
- 사업비 : 전국 300개 내외 업체
- 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지원센터

지원내용

- 컨설팅-점포 별 부족한 분야를 분석, 맞춤형 컨설팅 지원
- 교육-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우수 백년가게의 소상공인 교육 강사활동
- 금융-보증 및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 시 우대
- 홍보-현판 제공, 방송 · 신문 · 민간 O2O플랫폼 등 온 · 오프라인 통합홍보
- 네트워크-주기적인 워크숍 등을 통한 소통, 협력관계 구축
- 신청우대-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

신청방법 및 절차

-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접수 및 E-mail(100year@semas.or.kr) 접수병행
- 평가기준-경영자 전문성, 제품 · 서비스 차별성, 마케팅 차별성, 조직관리 수준
및 재무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백년가게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이며 향후 성과평가 후 재지정

문의처: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혁신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TEL (042)481-3914,3916
TEL (국번없이)1357

3. 소상공인 재기지원

10 희망리턴패키지

사업목적

-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안정적 폐업 및 임금근로자로의 전환 발판 마련을 통해 소상공인의 폐업 충격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취업 또는 재창업 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소상공인(기 폐업한 소상공인 포함)
- 시행시기 : '20. 3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사업비 : 345억원
- 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내용

- 사업정리컨설팅-폐업 시 절세 및 신고사항, 자산·시설 처분방법 등에 대한 일반/세무/부동산 분야 컨설팅 지원
- 재기교육-취업 희망 소상공인에게 취업 기본역량(면접, 이력서 작성), 취업정보, 개인신용관리 등의 교육 지원
- 전직장려수당-사업정리 컨설팅 혹은 재기교육을 받고 폐업신고 후 취업활동 또는 취업을 한 경우 전직장려수당 지급(최대 100만원)
- 취업성공패키지 추천-사업정리 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수료자 대상으로 취업성공 패키지 추천서 발급

신청방법 및 절차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ope.sbiz.or.kr) 통한 온라인 신청
- 컨설턴트 및 재기교육 기관 모집·선정-사업공고-신청·접수-컨설팅 및 재기교육 지원

문의처: 중소기업부 소상공인지원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TEL (042)481-8997
TEL (국번없이)1357

11 재창업패키지

사업목적

- 특화형 및 비생계형 업종으로 전환 또는 재창업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에게 교육 및 멘토링을 지원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업종전환 예정자 또는 폐업자
- 시행시기 : '20. 3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사 업 비 : 75억원
- 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내용

- 재창업교육-비과밀업종 재창업 또는 업종전환 희망 소상공인에게 경영 및 마케팅, 현장 견학, 상권분석 등을 교육(과정당 60시간)
- 재창업멘토링-재창업 교육 수료생 대상으로 마케팅, 세무, 창업 절차 등에 대한 멘토링 지원

신청방법 및 절차

- 온라인을 통한 수시 신청 및 접수 : 소상공인 지식배움터(edu.sbiz.or.kr)→재창업패키지교육→지역별 교육과정 검색→원하는 '교육과정' 클릭→세부 내용 확인 후 하단에 '신청하기' 클릭

문의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TEL (국번없이)1357

12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사업목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에 대하여 납부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2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 시행시기 : ‘20. 3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사업비 : 22.06억원
- 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내용

- 월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30~50%를 3년까지 지원

신청방법 및 절차

- 홈페이지(<http://www.sbiz.or.kr/eip/main/main.do>) 또는 전국 62개 소상공인 지원센터 방문 및 우편·팩스 신청
-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가입 및 납부실적 확인→보험금 환급

문의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TEL (국번없이)1357

4. 소상공인 정책자금

13 소상공인특화자금

사업목적

- 숙련기술 기반의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장비 도입, 경영안정 등에 필요한 자금지원
- * 주요 업종 : 수제화, 의류·섬유, 가죽·가방, 기계·금속가공, 인쇄 등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 지원규모 : 4,500억원
- 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 대출한도 : 업체당 5억원(운전자금 1억원 한도)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시설자금 8년
- 대출 취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기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공지
* 단,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62개 지역센터 방문 접수
- 신청절차 : 신청·접수 → 심사평가 → 약정 체결 및 대출
- 제출서류 : 대출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 신청양식 및 제출서류 목록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알림
마당-공지사항」에 게재된 소상공인정책자금 개시 공고에 첨부

문의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TEL (국번없이)1357

사업목적

- “성장기” 및 “성숙기” 소상공인의 활력 제고 및 재도약을 위한 자금 지원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5년 이상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 지원규모 : 2,300억원
- 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 대출한도 : 업체당 1억원(시설분야 2억원 한도)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직접대출 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대출 취급 금융기관(19개) :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한, 우리, 저축은행, 전북, 제주, 한국스탠다드차타드, 한국씨티, KEB 하나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기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공지
* 단,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62개 지역센터 방문 접수
- 신청절차 : 직접대출(신청·접수 → 심사평가 → 약정 체결 및 대출)
대리대출(신청·접수 → 보증서 발급 → 대출 실행)
- 제출서류 :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등
* 신청양식 및 제출서류 목록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재된 소상공인정책자금 개시 공고에 첨부

사업목적

- 소상공인의 자금애로 해소 및 영업지속률 제고를 위한 점포운영 자금 지원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 지원규모 : 11,025억원
- 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 대출한도 : 업체당 7천만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상환방식 : 2년 거치 후 3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
- 대출 취급 금융기관(19개) :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한, 우리, 저축은행, 전북, 제주, 한국스탠다드차타드, 한국씨티, KEB 하나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기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공지
* 단,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접수
- 신청절차 : 신청·접수 → 보증서 발급 → 대출 실행
- 제출서류 :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등
* 신청양식 및 제출서류 목록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재된 소상공인 정책자금 개시 공고에 첨부

문의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TEL (국번없이)1357

사업목적

- 우수한 사업성과 발전가능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하여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청년 또는 청년 고용 소상공인의 경영 활성화 지원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청년 소상공인(만39세 이하) 또는 50% 이상 청년근로자(만39세 이하)고용 사업주 또는 최근 1년 이내 청년근로자(만39세 이하) 고용 사업주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 지원규모 : 4,475억원
- 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 대출한도 : 업체당 1억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상환방식 : 2년 거치 후 3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
- 대출취급 금융기관(19개) :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한, 우리, 저축은행, 전북, 제주, 한국스탠다드차타드, 한국씨티, KEB 하나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기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공지
* 단,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접수
- 신청절차 : 신청·접수 → 보증서발급 → 대출 실행
- 제출서류 : 대출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 신청양식 및 제출서류 목록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재된 소상공인 정책자금 개시 공고에 첨부

문의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TEL (국번없이)1357

5. 전통시장

17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사업목적

-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가장 큰 불편사항인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차장 건립 지원 및 전통시장 인근의 공공·사설주차장 이용을 보조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2조에 의한 전통시장·상점가·상권 활성화구역 중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생협약이 체결된 곳
- 지원규모 : 100개 시장(1,424억원)

지원내용

- 지원조건 : 국비 60%, 지방비 40%
- 지원내용 - 주차장이 부족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주차장 건립·개보수 지원
- 부지확보 등으로 주차장 건립 곤란 시 전통시장 인근 공공·사설주차장 이용 보조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접수 : '20. 5월 중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와 협의 후 광역시·도에 신청
- 처리절차 : 사업공고(중기부) → 신청·접수(시·군·구) → 현장평가·진단(지방청, 시·도, 외부전문가) → 선정위원회 최정선정협의회(시·도, 지방청) → 심의조정위원회(중기부, 시·도) → 사업비 교부 → 사업 추진(시·군·구)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부동산 매매 동의서, 이해관계자 사전동의서, 시장자문 또는 사전컨설팅 결과보고서(총사업비 1억원 이상) 지방비 투·융자 심사결과서 또는 당해연도 심사계획서(실시한 경우에 한함)
* 신청양식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에 게재된 사업공고안 참조

문의처: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TEL (042)481-4563,4516
TEL (국번없이)1357

18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사업목적

- 화재로부터 안전한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개별점포 내 노후전선 정비 지원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제2조 제4호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상점가 및 지하도 상점가 제외)으로서 개별점포 노후전선정비를 희망하는 시장(점포)
- 지원규모 : 전통시장 40곳 내외(60억원)

지원내용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30%, 민간자부담 20%(지자체 부담가능)
- 시장당 5억원 이내(시장규모에 따라 차등)
- 지원내용 : 전통시장 개별점포 내 전기설비 개선(노후배선, 배관, 전등 및 콘센트 등)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접수 : '20. 1월 중
* 전통시장에서 지방자치단체(시·군·구→시·도)를 경유하여 지방중기청에 신청
- 처리절차 : 사업공고(중기부) → 신청·접수(시·군·구) → 현장평가·진단(지방청, 시·도, 외부전문가) → 서류평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심의조정위원회(중기부) → 사업비교부 → 사업 추진(시·군·구)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동의서 등
* 신청양식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에 게재된 사업공고안 참조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TEL (042)481-4563, 4516
TEL (국번없이)1357

19 시장경영바우처지원

사업목적

- 바우처 한도 내에서 마케팅·시장매니저·배송서비스 등의 정책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선택·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2조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 활성화구역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 상인회
 -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 진흥조합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 관리자
 - 동법 제66조에 의한 상인연합회의 시·도 지회
- 지원규모
 - 바우처 지원부문 : 전국 350곳 내외, 1곳당 최대 6천만원
 - * 배송서비스 계속지원시장 16곳 등 포함

지원내용

- 지원내용 : 공동마케팅, 시장매니저, 배송서비스 등의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30%~90%를 지원

〈선정 등급별 바우처 지원 한도〉

바우처 등급	가	나	다
바우처 지원 한도	60백만원	40백만원	30백만원

- * 상인연합회, 계속지원시장은 바우처 지원 한도 별도 운영

● 바우처 활용 범위 : 지급된 바우처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추진 가능

구분	분야	바우처 활용 범위
사업지원 바우처	마케팅	축제 및 이벤트 지원, 문화공연, 폴리마켓, 브랜드(BI, CI)개발, 웹사이트 모바일 앱 제작, 디자인개발(브로셔, 포장지 등), 전통시장 지도 제작, 스토리 북 제작, 외국어자료, 리플렛, 브로셔 제작 등
	상인교육	경영교육, 마케팅교육, 서비스교육, 제품개발교육 등
	컨설팅	코칭, 경영멘토링, 경영전략(로드맵) 수립 및 지원항목 코칭, 법인설립 자문 등
	홍보 (지역상품 전시회)	지역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20곳 이상(단, 제주는 5곳 이상)이 참여하는 “지역상품전시회” 개최·운영 경비 지원
인력지원 바우처	배송서비스	배송서비스 운영을 위한 인력 2명(배송기사 1, 전화상담원 1)의 인건비 지원
	매니저지원	유통, 마케팅, 기획, 회계, 세무 등 상인회 행정·사무지원을 위한 시장매니저의 인건비 지원

● ‘21년 지원대상 신청·접수 : ’ 20. 5월 ~ 6월 예정

* ‘20년 지원대상은 ’ 19. 9월 조기 선정 완료

* 신청서 작성 후 시·군·구 및 시·도를 거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송부

● 처리절차 : 지원대상 확정(중기부·소진공) → 사업계획서 제출(상인회→소진공)
→ 사업 수행(상인회, 수행기관) → 정산 및 완료보고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상인회등록증 등

* 신청양식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홈페이지에 게시

문의처: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TEL (042)481-4517,8929
TEL (국번없이)1357

20 온누리상품권 발행

사업목적

-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판매 촉진을 위해 발행하는 법정상품권으로, 시중의 14개 금융기관 및 BC카드에서 구매가능하고 전국의 가맹 전통시장·상점가에서 사용 가능

사업개요

- 발행규모 : '20년 2.5조원 규모 발행계획
- 구매처
 - 지류상품권 : 14개 금융기관
 -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국민은행 · 대구은행 · 부산은행 · 광주은행 · 전북은행 · 경남은행 · 기업은행 · 농협은행 · 수협 · 신협 · 새마을금고 · 우체국
 - 전자상품권 : BC카드 및 6개 금융기관
 - * BC카드, 우리은행 · 대구은행 · 부산은행 · 경남은행 · 기업은행 · 농협은행
 - 모바일 상품권 : 6개 금융기관 및 3개 간편결제사 앱(APP)
 - * 대구은행 · 부산은행 · 광주은행 · 전북은행 · 경남은행 · 농협 · 체크페이 · 비플 · 머니트리
- 사용처
 - 전국 전통시장 및 상점가 가맹점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
 - * 가맹점은 전통시장통(www.sijangtong.or.kr) 및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에서 확인
 - * 전자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전용 온라인쇼핑몰(<http://onnurimarket.kr>)에서도 사용 가능
사전에 BC카드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기명등록), 인터넷/ISP 등록 필요
 - 가맹점 등록 신청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
 - * 신청 및 등록 절차 : 가맹신청서 제출 → 가맹점 자격요건 심사 → 가맹점 승인 및 등록

지원내용

- 상인(개별가맹점) : 상품권 판매, 회수, 카드 수수료 국비 지원
- 상인회(환전대행가맹점) : 상품권 환전대행 시 수수료 지급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품권사업실
중소기업통합콜센터

TEL(042)363-7641~7643, 7646, 7632
TEL(국번없이)1357→0번

21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사업목적

- 지역의 역사·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하여 시장 고유의 특성과 장점을 살린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등을 특화 육성함으로써 고객이 즐겨 찾는 개성과 특색 있는 전통시장 육성

사업개요

- 지원규모 : 전통시장 및 상점가 139곳 내외('20년도 예산 292억원)
 - 희망사업 프로젝트(지역선도형시장)사업 : 2년간 시장 당 최대 20억원 이내
 - 희망사업 프로젝트(문화관광형시장)사업 : 2년간 시장 당 최대 10억원 이내
 - 특성화 첫걸음시장(기반조성)사업 : 1년간 시장 당 3억원 이내
 - 특성화 첫걸음시장(컨설팅)사업 : 최대 6개월 이내 시장 당 15백만원 이내
- * 사업비 편성 : 국비 50%, 지방비 50% 매칭[단, 특성화 첫걸음시장(컨설팅)사업은 국비 100%]
-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 중 상인조직을 보유한 곳으로서 특성화 역량이 충분한 시장

지원내용

- 희망사업 프로젝트(지역선도형시장)사업 : 지역 대표 시장 및 특성화 성과 우수시장을 선별하여 지역 거점시장이자 롤모델로 육성
 - 시장 대표상품(특화 콘텐츠) 개발 및 판로개척
 - 외래 관광객 수용기반 조성(간편결제, 관광통역 안내 등)
 - 기타 상인회에서 희망하고 활성화 가능성이 높은 특색 육성사업 일체
- 희망사업 프로젝트(문화관광형시장)사업 : 지역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시장 고유의 특장점을 집중 육성하는 상인중심의 프로젝트 지원
 - 지역특색(문화, 관광, 역사)과 연계한 시장 투어코스 개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문화콘텐츠 육성

- 시장 대표상품(PB상품) 개발, 홍보·마케팅 등 특화상품의 판로개척 지원
- 기타 상인회에서 희망하고 활성화 가능성이 높은 특색 육성사업 일체
- 특성화 첫걸음시장(기반조성)사업 : 희망사업 프로젝트(특성화) 추진 전, 전통시장 5대 핵심과제를 중점 수행하여 시장의 기초역량 강화
 - 결제편의, 고객신뢰, 위생청결 등 3대 고객서비스 혁신 / 상인조직 역량제고, 안전관리·화재예방 등 2대 역량강화
 - 특성화 첫걸음시장(기반조성) 사업 추진성과를 평가하여 우수시장은 희망사업 프로젝트(문화관광형시장)사업 2년 연속 지원
- 특성화 첫걸음시장(컨설팅)사업 : 기초역량이 일정수준 이하인 곳을 대상으로 서비스 혁신 전략수립, 상인조직 역량배양 등 종합컨설팅 지원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접수 : 매년 5월경 다음연도 지원시장 선정공고
- 사업절차 :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지원대상 선정평가 → 지원대상 선정 심의·발표 → 사업추진 → 성과조사·평가
- 제출서류 : 「2020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후보시장 모집(중소벤처기업부 공고)」에 따름

문의처: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특성화지원실

TEL (042)481-4547,4581
TEL (042)363-7781,7622

22 청년몰 조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

사업목적

- 전통시장 내 유희공간을 활용하여 볼거리·즐길거리가 가득한 복합 청년몰 조성
준비된 예비 청년상인의 전통시장 창업 지원
- 既지원 청년몰의 사후지원 및 청년상인의 자생력 강화 도약지원 등으로 젊은 고객
유입을 통한 전통시장 활력 제고 및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여

사업개요

- 지원규모 : 복합청년몰 조성 3곳 내외(22.5억원), 기존 청년몰 활성화·확장지원 17
곳 내외(53.5억원), 청년상인 도약지원 200명 내외(20억원)
- 지원대상
 - (청년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중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약이 체결된 곳
 - (청년상인) : 만39세 이하로 청년몰 입점의 경우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 청년상인이며, 도약지원의 경우 전통시장 내 영업 중인 청년상인

지원내용

- 청년몰 조성(몰 당 2년 10~30억원) : 전통시장 내 일정구역 안에 청년상인 집적단지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및 환경개선, 휴게실 등 공용공간 조성 등을 지원
- 창업지원(청년몰 입점) : 창업교육, 임차료·인테리어 비용 보조, 컨설팅, 홍보·
마케팅 등 청년상인 청년몰 입점 및 창업 지원
- 청년상인 도약지원(1명 당 최대 10백만원) : 청년상인 자생력 강화(전문가 컨설팅 및
시작품 제작, 상품·포장 디자인 개선 등) 지원
- 청년몰 활성화(몰 당 1년 3억원) 지원 : 조성완료된 청년몰의 공동마케팅, 컨설팅, 교
육, 조직화 지원 등 SW중심의 활성화 지원

- 청년몰 확장(몰 당 10억원) 지원 : 조성완료된 청년몰의 고객편의시설, 공용공간(휴게실 등), 진입환경(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지역민 소통공간(공공어린이집, 공용카페 등)조성 등 HW지원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접수 : 신청서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고문 확인
- 사업절차 :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선정평가 → 최종선정 → 사업수행
- 제출서류 : 「2020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참조

문의처:청년상인 스타트업지원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TEL (042)252-1427
TEL (국번없이)1357



신용보증기금 부산경남영업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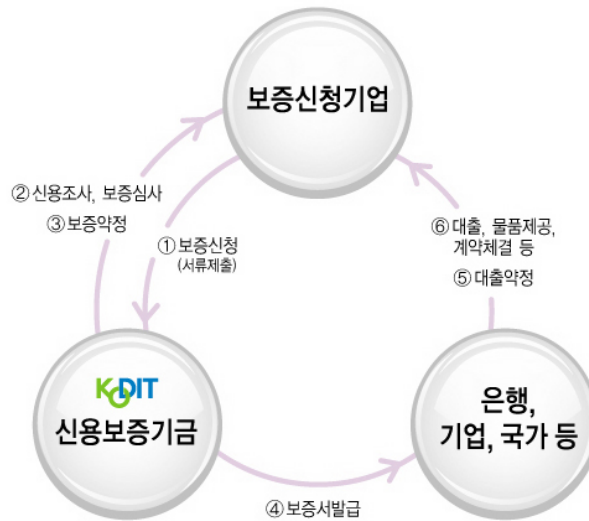
1 신용보증기금 주요업무

구 분	내 용
신용보증	기업이 은행 등으로 부터 사업상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때 부담하는 채무와 상거래와 수반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
유동화회사보증	중소·중견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회사채 등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유동화전문회사가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보증
신용정보종합관리	보증기업의 신용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체계적으로 종합관리
산업기반신용보증 (인프라보증)	SOC 민간투자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할 경우 신용보증을 지원하여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국민생활 편익 증진
신용보험	중소기업 매출채권(어음 및 외상매출금)의 회수불능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연쇄도산 방지
보증연계투자	성장가능성은 높으나 신용도가 낮아 민간투자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 보증과 연계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 인수
기업경영지원	창업상담부터 창업 후 경영컨설팅서비스까지 맞춤형 서비스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진단 및 지도

2 신용보증제도 개요

기본구조

- 신청기업의 요청에 의하여 기업이 부담하는 각종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성장유망한 기업을 지원



보증이용에 따른 장점

- 담보문제 해소
 - － 은행으로부터 대출, 거래처로부터 물품공급 등을 받는데 부족한 담보 제공
- 비용절감
 - － 은행은 신용보증서 대출에 대해 우대 금리 적용
 - － 부동산대출에 따른 비용이 절감되고 민간 보증회사보다 보증료 저렴
- 대외신용도 제고
 - － 우수기업에게 선별적으로 지원됨으로써 보증받은 기업의 신용도 제고 효과
- 기업경영 부담 완화
 - － 법인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대표자 개인의 연대보증 면제

신용보증의 종류

보증종류	내 용
대출보증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을 대출받는 데 따른 보증 (일반운전자금, 설비투자자금, 무역금융, 구매자금용, Network Loan, 각종기술 개발자금, 할인어음 등)
제2금융보증	기업이 제2금융기관 또는 기타 대출기관으로부터 대출 받는데 따른 보증 (농·수협, 중소기업진흥공단, 종합금융회사, 보험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상호저축은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어음보증	기업이 상거래의 담보 목적 또는 대금결제수단으로 주고 받는 어음에 대하여 지급을 보증 (지급어음, 받을어음 및 담보어음에 대한 보증)
이행보증	- 기업이 건설공사, 물품납품, 용역제공 등을 위하여 입찰참가 또는 계약체결 등을 할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차액보증금, 지급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 보증상대기관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금융회사 또는 이러한 기관들과 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 시행자 등 금융 위원회가 정하는 자
지급보증의보증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을 때 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에 응하여 할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 (신용장 개설에 대한 지급보증 등)
납세보증	기업이 국세 및 지방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 분할납부, 징수유예를 받고자 할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전자)상거래 담보보증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계약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대금지급채무에 대한 보증

신용보증대상기업

- 신용보증기금은 균형있는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기업에 대하여 보증지원

구 분	내 용
보증대상기업	■ 개인기업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법인기업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 기업단체 :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보증대상업종	■ 신용보증은 업종별 제한없이 보증취급 가능 ■ 다만, 도박·사행성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투기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일부 보증지원이 제한

보증이용 절차

단 계	절 차
보증신청 및 상담	■ 영업점 방문 또는 신보 홈페이지를 통하여 보증신청 ■ 신규기업은 영업점 방문상담, 기존 보증거래기업은 전화상담 가능 (방문상담 생략)
↓	
자료수집 및 신용조사	■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 수집된 자료 및 담당자 현장출장 등을 통해 신용조사
↓	
보증심사 및 승인	■ 신용평가 실시 및 신용등급 산출 ■ 각종 검토표 충족여부 검토 ■ 보증지원 가능 여부 및 보증금액 검토 ■ 보증승인(영업점 또는 본부)
↓	
보증서 발급	■ 신용보증약정 체결 ■ 보증료 수납 (신용카드 결제 가능) ■ 보증서 발급(전자보증서)

보증신청

- 영업점 방문 또는 신보 홈페이지를 통하여 보증신청

신용보증상담

- 대표자(실제경영자) 또는 업무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보증신청기업의 신용상태와 보증신청금액 등에 대한 적정성을 사전 검토하는 절차

신용보증 상담 시 도움이 되는 자료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 법인등기부등본)
- 최근년도 재무제표(매출실적 확인자료)
- 기타 사업현황 설명자료(사업계획서 등)

자료수집

- 고객편의를 위하여 자료는 고객의 협조를 얻어 신보직원이 직접 수집

자료원천	신용조사자료	고객협조사항
대법원등기자료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舊 법인등기부등본)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보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고지
행정정보자료	■ 주민등록등·초본 ■ 지방세납세증명 등 행정정보^{주)}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납세증명 ■ 납부내역증명	대표자 본인 등이 행정정보 이용에 동의
국세청자료	■ 부가세과세표준증명 등	Hometax에 발급신청 후 신보에 문서발급번호 통지
금융거래정보자료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금융거래확인서 제공에 동의
세무회계자료	■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금년, 전년) ■ 재무제표(최근 3년)	회계(세무)사무실 및 고객이 신보에 자료 전송
기타자료	■ 주주명부,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거주주택) 사본	예비조사시 Fax로 주주명부 등 제출

주) 국민연금 등 보험료 납부(완납) 증명 등

신용조사

-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예비조사, 직접조사, 간접조사 등을 실시하여 기업의 신용상태를 확인
- 현장조사를 통해 영업현황과 경영방침, 경영계획 등을 파악

보증심사

- 신용조사를 바탕으로 내부기준에 따라 사업성, 미래성장성, 기업가치, 기술력, 기업가 정신 등을 고려한 맞춤형 기업평가를 통하여 보증지원 여부 및 보증금액을 결정

보증결정 및 승인통지

- 보증이 결정되면 승인 결과를 통지하고, 신용보증약정 체결 및 보증서 발급을 위한 제반사항을 안내

약정체결과 보증서 발급

- 대표자(실제경영자) 본인이 신용보증약정서에 직접 서명·날인하여 신용보증약정 체결 후 보증서 발급
- 보증료 : 보증금액에 대해 연 0.5% ~ 3.0%(대기업 3.5%)의 범위 내에서 평가등급 등에 따라 차등 적용

3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창업단계 (창업활성화 맞춤형 프로그램)

구 분		대상기업	우대내용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예비창업보증	■ 창업 전 6개월 이내	■ 지원한도 10억원(운전+시설) ■ 보증비율 100% ■ 고정보증료 0.7% 적용
	신생기업보증	■ 창업 후 3년 이내	■ 지원한도 10~20억(운전) ■ 보증비율 95~100% ■ 보증료 0.4%p 차감
	창업초기보증	■ 창업 후 3~5년 이내	■ 지원한도 30억(운전) ■ 보증비율 95% ■ 보증료 0.3%p 차감
	창업성장보증	■ 창업 후 5~7년 이내	■ 지원한도 30억(운전) ■ 보증비율 90% ■ 보증료 0.3%p 차감
	퍼스트펍권보증	■ 창업 후 5년 이내	■ 지원한도 30억(운전) ■ 보증비율 90~100% ■ 고정보증료 0.7% 적용
연대보증면제 (법인기업만 해당)		■ 보증 신규이용기업	■ 실제경영자 연대보증인 면제 ■ 책임경영 심사 및 이행약정
유망청년창업기업 보증		■ 창업 후 7년 이내 ■ 대표자 만 17~39세 ■ 유망창업기업	■ 보증비율 90~100% ■ 고정보증료 0.3% 적용
혁신성장 고용창출 협약보증		■ 창업 후 7년 이내 ■ 신성장기업 및 고용창출기업	■ 신보 -보증비율 3년간 100% -보증료 0.2~0.3%p 차감 ■ 은행 -대출금리 우대

성장단계 (성장동력 확충 프로그램)

구 분	대상기업	우대내용
유망, 특화, 가젤, BEST서비스기업 보증지원 프로그램	■ 고용, 부가가치 창출효과 및 성장잠재력 높은 서비스 ■ 경제적 기여도 높은 신사업 서비스	■ 보증비율 90% ■ 보증료 0.1%p~0.5%p 차감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보증	■ 신성장동력 45개 분야 및 275개 품목 관련 기술보유 및 생산기업	■ 보증비율 90% ■ 보증료 0.1~0.3%p 차감
수출중소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 수출기업의 수출역량 단계에 따른 보증 지원 ■ 수출희망-진입-확장-주력-스타기업	■ 보증비율 90%~100% ■ 보증료 0.2~0.3%p 차감 ■ 수출스타기업은 0.5% 고정보증료
고용창출 특례보증	■ 최근(향후) 6개월 이내 신규 고용 창출 (예정) 기업에 대해 보증지원	■ 고용인원에 따라 한도 우대 ■ 0.7% 고정보증료 적용
지식재산(IP) 보증	■ 우수 지식재산(IP)에 대한 연구개발 (R&D), 기술거래, 사업화 및 활용촉진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보증비율 90~100% ■ 보증료 0.2%p 차감
SMART융합보증	■ 융합설비 도입, 융합제품 생산기업 ■ SMART공장 참여 또는 구축기업 ■ ESS장치 생산 또는 도입 기업	■ 보증비율 90% ■ 보증료 0.2%p 차감
에너지산업 금융지원 보증	■ 신재생에너지 사업 영위 기업 ■ 수요자원거래시장 참여 기업 ■ ESS장치 생산 또는 도입 기업	■ 보증비율 90% ■ 보증료 0.2%p 차감 ■ 은행 : 보증료 0.2%p 지원

성숙단계 (지속성장 지원 프로그램)

구 분	대상기업	우대내용
유동화회사보증	■ 지속성장 유망기업	■ 기초자산 편입한도 - 중소기업 150억원 - 중소기업 외 250억원
프런티어스타기업 라이징스타기업 신보스타기업	■ 향후 일정 기간 내에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거나 기업공개 가능성이 높은 기업	■ 보증료 0.2~0.3%p 차감 ■ 신보스타기업은 0.5% 고정 보증료 ■ 상시 경영자문
고용의 질 우수기업	■ 질적 수준이 우수하거나,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기업 - 좋은일자리 기업(GWP) - 최고일자리 기업(BWP))	■ 보증비율 90% ■ 보증료 GWP 0.4%p 차감 ■ 보증료 BWP 0.5%p 차감

재도전단계 (경영애로기업의 재도약, 실패기업의 재도전 지원 프로그램)

구 분	대상기업	우대내용
재창업기업보증	■ 실패한 기업인이 사업재기를 위한 재창업 신설기업 (신용회복위원회에 재창업사업성평가를 의뢰한 기업)	■ 지원한도 30억 이내 (운전자금 10억원) ■ 보증비율 100% ■ 고정보증료 1.0%
재도전 재기지원 보증	■ 실패한 기업주의 기술 및 경험이 사장되지 않도록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보증 (신보채무자)	■ 보증비율 80% ~ 100% ■ 구상채무 변제자금에 수반하여 신규보증 동시 지원
경쟁력 향상 프로그램	■ 일시적으로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는 보증기업	■ 보증료 0.2%p 차감 ■ 가산보증료 적용 배제 ■ 신규보증 지원 ■ 신용보증 재조정 ■ 경영컨설팅

4 신용보험제도

매출채권보험제도 기본개념

- 판매기업(보험계약자)이 보험기간 동안 구매기업에게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여 취득한 매출채권(외상매출금 + 받을어음)에 대해 향후 구매기업의 지급불능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예측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험자(신용보증기금)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



보험가입대상

보험계약자 요건	■ 규모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단, 중견기업은 진입 3년 이내 이고, 평균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을 대상) ■ 업종 : 제한없음(보험운용 필요성이 적은 일부 업종 제외) ■ 매출액 : 제한없음 ■ 영업실적 : 최근 결산일 현재 영업실적 1년 이상 ▷ 간편보험, 창업보험(7년 이내 창업)은 영업실적 요건 없음 ▷ 일석e조보험, 스타트업보험은 2년 이상
구매기업 요건	■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 현금거래기업, 해외소재기업, 보험계약자의 관계기업, 신용도가 취약한 기업 등 제외
보험대상 매출채권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채권 (외상매출금 + 받을 어음)

보험상품 및 운용방식

- 매출채권보험은 보험기간 내에 발생하는 모든 매출채권을 보험대상으로 하는 근보험 방식의 보험가입을 원칙으로 함 (하나보험 제외)

상 품	운 용 방 식
다사랑보험 - 표준형 - 선택형 - 맞춤형 - 소기업형	■ 표준형은 보험계약자와 거래 중인 구매기업 중 일정 거래 규모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구매기업별 결제 기일과 보험금액을 계약으로 정하고 해당 기간 내에 발생하는 매출채권 전체를 보험가입대상으로 운용 (다만, 신용도가 취약한 구매자는 제외) ■ 선택형은 표준형을 기초로 보험계약자에게 일부 선택권 부여 ■ 맞춤형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대상구매기업을 모두 선택 ■ 소기업형은 당기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영세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자 계약자 및 구매자 평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운용
한사랑보험	■ 보험계약자와 거래중인 구매기업 중 하나의 구매기업을 대상으로, 결제기일과 보험 금액을 계약으로 정하여 운용하는 보험 ■ 구매기업은 신용등급이 신보가 정한 일정수준 이상인 기업에 한정
하나보험	■ 보험계약자와 구매기업 간에 이미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건별로 운용하는 보험 ■ 구매기업은 신보의 별도 심사를 거친 기업으로 한정
일석e조보험	■ 보험가입 구매기업에 대한 매출채권 및 보험금청구권을 담보로 협약은행*에서 대출 이 가능하도록 운영 * 협약은행 : 기업은행, KEB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등
간편보험	■ 간편보험평가시스템을 통해 가입의 편리성과 신속성을 높인 보험 ■ 간편등급 7등급 이상 및 무등급 구매자에 한정
창업보험	■ 창업기업(7년 이내)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구매기업 가입 가능 신용등급을 완화하고 보험료를 우대하는 상품
스타트업보험	■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사업 정착 지원을 위해 물품 및 용역을 외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자 측면에서 지원하는 보험 ■ 사업개시 3년 미만의 제조업, 지식서비스업 구매자에 한정
창업성공 패키지보험	■ 보험의 위험보장기능과 보증의 자금지원 및 컨설팅의 경영진단 기능을 결합하여 패키지로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상품
전자방식 보험	■ 보험계약자가 매출채권의 발생 및 결제 처리를 e-MP에 입력하여 거래처의 결제 지연을 시스템적으로 관리하는 보험
협약보험	■ 신보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 유관단체의 추천을 받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할인 등 가입조건을 우대하는 상품
환급형보험	■ 보험료 환급 약정을 체결한 보험계약자가 약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받는 보험
옵션형보험	■ 보험기간 중 상거래 환경변화에 따라 보험금액 조정 및 구매기업 Pool을 변경할 수 있는 옵션이 부여된 상품

보험가입 세부 내용

● 보험가입한도

- 신청기업(보험계약자) 보험가입한도 : 최고 50억원
- 구매자별 보험가입한도 : 구매자의 신용도, 거래규모, 업종 등 고려하여 결정

● 보험료

- 보험료율은 판매기업(보험계약자)의 매출채권 관리능력, 보험가입대상 구매기업의 신용도, 거래비율, 결제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보험가입매출채권에 대하여 연율 0.1%~5.0%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출
※ 보험가입매출채권은 보험대상매출채권에 인수비율을 적용하여 환산

● 보험기간

- 다사랑보험 / 한사랑보험 / 일석e조보험 → 보험가입일로부터 1년

보험금 지급

● 보험금 지급 청구: 보험사고 발생

- 구매자에게 지급불능 사유(부도, 폐업·해산등기, 회생·파산·개인회생 절차 개시신청) 발생
- 구매기업이 매출채권의 결제기일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결제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채무불이행 발생(다사랑·한사랑보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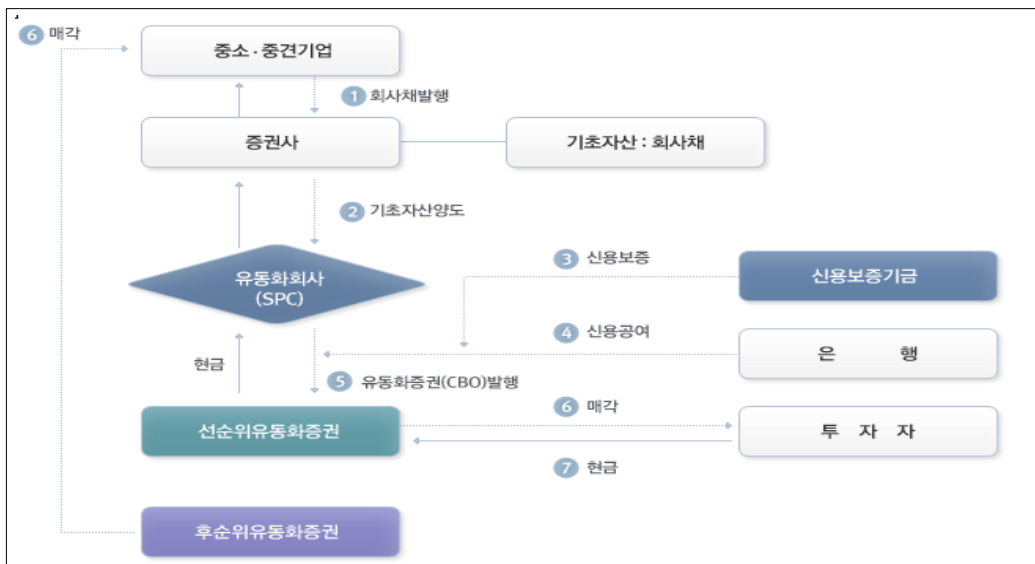
● 보상범위: 다음 중 적은 금액

- 보험금 지급대상 구매자의 보험금액
- 실제 손해 금액에서 보상률(70~80%)을 곱한 금액

유동화회사보증제도 개요

- 개별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등을 유동화회사(SPC)가 매입하여 유동화자산(기초자산)을 구성한 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 발행
 - 유동화증권은 선순위증권과 후순위증권으로 분리하여 발행
 - 선순위증권에 대하여 신보가 신용보증 제공
- 신보의 보증으로 최우량등급(AAA)으로 상향된 선순위 유동화증권은 직접금융시장에 매각하고, 후순위 유동화증권은 회사채 발행기업이 매입
- SPC는 기초자산과 유동화증권의 금리차(Excess spread)로 확보된 잉여현금으로 보증료 등 유동화업무와 관련된 제비용 충당
- 유동화증권 발행일에 기업은 회사채 발행대금을 수취하며, 이후 매 3개월 단위로 이자를 납부하고, 3년 뒤 원금을 상환(만기 후 차환 가능)
 - 기업은 장기(3년)고액(5억원 이상)의 안정적인(고정금리)자금 조달 가능

〈유동화회사보증의 구조〉



지원대상

● 편입대상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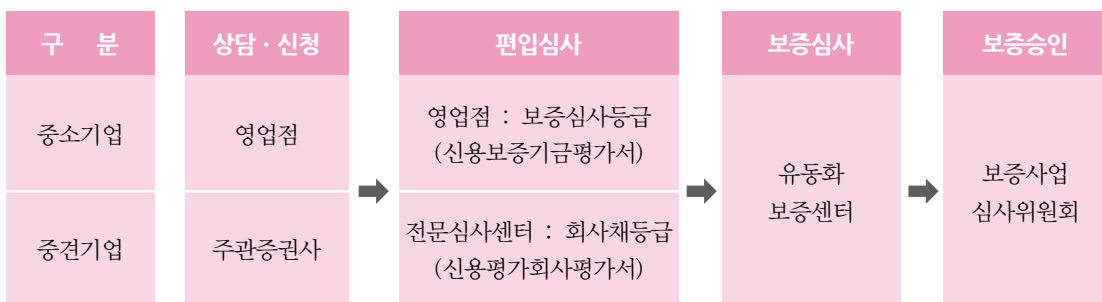
중소기업	■ CPA 감사보고서 보유 : 신보의 보증심사등급 K10 이상 ■ CPA 감사보고서 미보유 : 신보의 보증심사등급 K9 이상
중견기업	■ 신용평가회사의 회사채등급 BB- 이상

(주) 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

발행금리

- 중소기업 : 신용등급별로 2.89%(K1등급) ~ 4.79%(K10등급) 수준
- 중견기업 : 신용등급별로 2.94% (A 등급) ~ 4.49% (BB- 등급) 수준
 - 상기 금리수준은 2019.02.14.일자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한 시가평가수익률 기준으로 발행 시점의 수익률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후순위증권 연율 1~1.5% 범위 내에서 별도 인수 (중소기업은 연 0.9~1.2%)

취급절차



6 보증연계투자

보증연계투자 개요

-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및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과 투자를 연계한 복합금융상품
 - 가치창출능력과 미래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금융·비금융 복합지원을 통해 기업가치 제고

지원대상

- 지원대상 기업
 - 기술력 및 경영진의 경영능력이 우수하고 사업전망이 양호한 비상장 중소기업으로서, 신용보증을 이용 중이거나 투자와 보증을 동시에 신청한 기업
 - 창업기업 등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기업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투자

지원내용

- 투자한도
 - 개별기업당 최대 30억원으로 신보의 보증금액의 2배 범위 이내로 운용하되, 신용등급별로 차등적용

상 품		운 용 방 식
K6이상		30억원
K7~K8	K1~K7	15억원
K9 이하, 무등급 등	K8 이하, 무등급 등	10억원

- 투자종류
 - 주식(보통주, 우선주) 또는 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 투자기간
 - 주식 3년~10년, 사채 5년
 - IPO 가능성 및 투자기업의 업력 등에 따라 투자기간은 탄력적으로 운용
 - * 단, 최대 허용기간은 법인 설립 후 17년까지 이내

기대효과

- 재무구조 개선
 - 금융비용 부담이 적은 직접투자로 부채비율 감소를 통한 재무건전성 제고
- 대외신인도 상승 및 투자 마중물 역할
 - 공신력 있는 중소기업 전문기관인 신보의 투자로 대외신인도 상승 및 후속 투자 유인 효과
- 경영권 간섭 최소화
 - 지분 취득 한도 설정(20%) 등으로 경영권 간섭 최소화 및 우호지분 확보 효과
- 기업가치제고 서비스 제공
 - 투자 이후 금융·비금융 지원 등 기업가치 제고(Value-up) 서비스 제공

취급절차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고객센터

TEL 1588-6565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www.kodit.co.kr → 온라인 신용보증 또는 신용보험 → 상담신청

7 부산광역시「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자금」지원

부산광역시 소재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One-Stop자금 지원으로
기업편의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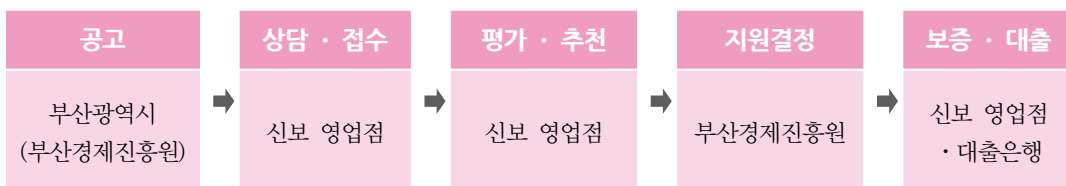
지원개요

- 지원규모 : 500억원
- 지원한도 : 업체당 8억원 이내 ▷ 시설자금 5억원, 운전자금 3억원
- 대출취급은행 : 부산, 우리, 한국씨티, 국민, 신한, 기업, 농협, 수협, SC제일, KEB하나, 산업, 대구, 경남
- 접수기간 : 자금 소진시까지

지원대상기업

- 부산지역내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제외대상》- 신청일 현재 시 중소기업자금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
- 세부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는 자금지원계획 공고문 참조

지원 절차



우대사항

- 보증비율 우대 : 90%
- 보증료 우대 : 0.2%p 감면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고객센터 TEL 1588-6565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www.kodit.co.kr → 온라인 신용보증 또는 신용보험 → 상담신청



기술보증기금

1 기술보증

- 담보력이 부족하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성, 사업성 등 미래가치를 평가하여 보증서를 발급해 드림으로써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

보증 대상기업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상시종업원 1,000인 이하이고, 총 자산액이 1,000억원 이하인 기업
- 산업기술 연구조합
(상기 대상기업 중 “은행업감독규정”에 의한 주채무계열 소속기업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제외. 단, 기업구매자금 대출, 기업구매전용카드대출 및 무역금융에 대한 보증에 대해서는 상위 30대 계열기업군 소속기업만 제외)

※ 중점지원 대상기업

기술혁신
선도형 기업

- 벤처기업
- INNO-BIZ기업
- 다음업종 영위기업 중 기술사업평가등급 B등급 이상인 기업
 -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미래성장유망산업 (6T산업) 영위기업, 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 혁신형 지식 서비스산업 영위기업, 부품소재 전문기업, 기술집약산업 영위기업, 신·재생 에너지관련 산업 영위기업, 선도콘텐츠 산업 영위기업 등
- 기술인증획득기업, 기술개발사업 수행기업 또는 기술력 인정기업, 기술 관련 수상기업 등

기타 우선지원
대상기업

- 창업 후 7년 이내 기술창업기업,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기업 등

주요보증의 종류

- 대출보증 : 금융기관 등에서 각종 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 전자상거래보증 : 기업간 전자상거래의 대금결제를 위한 대출금 또는 외상 구매 자금에 대한 보증
- 무역금융보증 : 수출기업의 원재료 구입을 위한 금융기관의 무역금융 보증
- 지급보증의 보증 : 금융기관의 각종 대내외 지급보증(무역어음인수 포함)과 농협은행등·수협(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포함)의 수입 신용장 발행에 대하여 보증
- 이행보증 : 기업이 건설공사, 물품의 공급, 용역 제공 등을 위한 입찰 또는 계약 시 납부하여야 할 각종 보증금에 대한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이용절차

단계별	취급자	주요내용
보증신청	신청기업	인터넷(홈페이지 사이버영업점), 영업점에서 신청
상담	영업점 평가담당자	고객과의 면담결과에 따라 보증금지·제한 해당여부, 기보증 내용, 기술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보증진행 여부결정, 절차안내
기술사업계획서 제출	영업점 평가담당자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여타 필요서류는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이 직접 수집)
기술평가	영업점 평가담당자	신청기업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검토 후 현장 평가를 실시하여 기술개발 능력, 제품화 능력, 생산 능력 등 확인
심사·승인 후 보증서발급	영업점 심사 및 평가담당자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승인 시 보증약정 후 보증서 발급

제출서류

	구분	자료명	고객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작성서류	▶ 기술사업계획서	▶ 사이버영업점에서 직접 작성 *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제출도 가능	서식
	준비서류	▶ 주주명부 ▶ 임차계약서사본 (사업장, 거주주택)	▶ 고객이 팩스로 송부 또는 직원이 현장 조사할 때 준비	-
기금 수집 서류	대법원 등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보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 (발급수수료는 기보가 부담)	-
	행정정보	▶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 대표자 본인이 행정정보이용에 사전 동의 ▶ 기타제공행정정보 : 산업재산권등록원부, 지방세납세증명	사전 동의서
	금융거래	▶ 금융거래확인서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에 대한 기업체 사전 동의	
	국세청· 세무회계 자료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표준재무제표증명	▶ 세무회계자료 온라인 제출에 대한 기업체 사전 동의 ▶ 세무사 사무실(또는 신청기업)이 세무 회계자료 온라인 제출센터(사이버 영업점 내 자료제출)에 신청하면 기보로 자동제출	재무 데이터 제출

※ 양식은 기보 홈페이지(www.kibo.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가능

- 부산광역시가 선정한 부산광역시 지역주력산업 영위기업에 대해 금융지원을 함으로써 전략산업 육성과 성장발전에 기여

대상기업

- 부산광역시 선정 지역주력산업 세부분류

분 야	유 망 품 목
지능형기계부품	① 지능형 생산자동화기계 ② 지능형 정밀진단·제어시스템 ③ 지능형 유압·유체시스템 ④ 고효율 지능형 액추에이터 ⑤ 수송기기 제어부품 ⑥ 고속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⑦ 고속·고정밀 지능형 제어시스템
클린에너지	① 클린에너지 모듈 부품 ② 풍력/태양광 등 에너지 부품 ③ 지능형 송배전 시스템 ④ 발전설비 유지, 보스 서비스 ⑤ 에너지 저장관리 시스템 ⑥ 태양광 에너지 저장효율 개선 ⑦ 전력설비 고장진단 기술 ⑧ 전력설비 파손방지 기술
바이오메디컬	① 침단의료기기 ② 진단치료기기 ③ 고령친화기기 ④ 헬스케어제품 ⑤ 스마트 헬스케어 기술 ⑥ 항노화제품 ⑦ 건강기능식품 ⑧ 해양수산식품 ⑨ 의료서비스 ⑩ 생체신호 측정기술
지능정보서비스	① 드론활용 스마트도시 실증 서비스 ② 초연결 기반 융합지능 서비스 기술 ③ IoT 기반 서비스 플랫폼 ④ 상호작용 체감형 콘텐츠 ⑤ AR/VR 콘텐츠

우대사항

- 보증료 우대
 - 지역주력산업 영위기업 : 0.1%p 감면
 - 지방기술유망기업 : 0.3%p 감면
 - 지방이전중소기업 : 1.0% 고정보증료율
 - 지방소재창업기업(창업 후 7년 이내) : 0.4%p 감면(최대)
 - 지역산업단지 입주기업 : 0.2% 감면
- 보증비율 우대
 - 지방기술유망기업 : 90%
 - 지방이전중소기업 : 90%
 - 지방소재창업기업(창업 후 7년 이내) : 100%(최대)
 - 지역산업단지 입주기업 : 90%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TEL 1544-1120

3

「부산광역시 기술혁신기업자금」 협약보증

부산광역시 소재 우수기술보유기업에 대한 One-Stop자금 지원으로 기업편의 제공

지원개요

- 지원규모 : 800억원(2020년 기준)
- 지원한도 : 업체당 8억원 이내 ▷ 시설자금 5억원, 운전자금 3억원
- 대출취급은행(13개) : 부산, 우리, 한국씨티, 국민, 신한, 기업, 농협, 수협, SC제일, KEB하나, 산업, 대구, 경남
- 접수기간 : 자금소진 시까지

지원대상기업

- 부산지역 내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 제외대상 》
- 신청일 현재 시 중소기업자금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잔여 2개월 이내 기업은 가능)
- 세부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는 자금지원계획 공고문 참조

지원절차



우대사항

- 보증료 우대 : 0.2%p 감면, 우대기간 : 보증지원 후 3년

부산광역시 소재 우수기술보유기업에 대한 One-Stop자금 지원으로 기업편의 제공

대상기업

- 지원규모 : 200억원(2020년 기준)
- 지원한도 : 업체당 8억원 이내 ▷ 시설자금 5억원, 운전자금 3억원
- 대출취급은행(13개) : 부산, 우리, 한국씨티, 국민, 신한, 기업, 농협, 수협, SC제일, KEB하나, 산업, 대구, 경남
- 접수기간 : 자금소진 시까지

지원대상기업

- 부산지역 내 본사와 사업장을 둔 지식문화산업 영위 중소기업으로 신기술사업자 《제외대상》
 - 주력업종이 지식문화기업지원사업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기업
 - 신청일 현재 시 중소기업자금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잔여 2개월 이내 기업은 가능)
- 세부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는 자금지원계획 공고문 참조

지원절차



우대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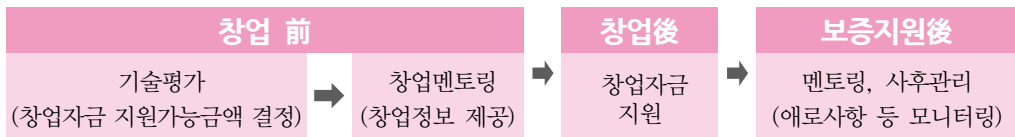
- 보증료 우대 : 0.2%p 감면, 우대기간 : 보증지원 후 3년

5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일자리창출 방안으로 구직에서 창작창업으로의 창업분위기 조성 및 기업생애주기별 기술금융 생태계 구축

지원개요

- 창업준비단계에서 기술평가를 실시하여 창업자금 지원가능금액을 제시, 창업 즉시 당초 제시한 창업자금 보증 지원(창업정보를 제공하는 창업멘토링 지원 병행)



분 야	대 상
일반창업	▶ 지식재산권 사업화 · 혁신성장산업 창업 예정인 자 ▶ 지식문화, 이공계챌린저, 기술경력 · 뿌리창업, 첨단 · 성장연계창업 예정인 자 ▶ 정부 · 지자체 등이 주관하는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등
전문가창업	▶ 교수: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원(교수, 부교수, 조교수) ▶ 연구원: 공공연구기관에서 근무한 연구원 ▶ 기술사 및 기능장: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및 기능장 ▶ 특급기술자: 전공, 해당기술분야 종사기간 고려

- 대상자금
 - 창업초기 운전자금(창업자금 등) 및 시설자금(사업장 임차자금 등)
- 지원한도
 - 최대 10억원 (창업분야, 기술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 보증우대
 - 100% 전액보증
 - 0.7%p 보증료 감면
 - 1억원 이하 기술평가료 면제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TEL 1544-1120

6 기술창업보증(맞춤형 창업기업 및 청년창업우대프로그램)

1 청년창업기업우대 프로그램

개요

- 고용 없는 성장 시대에 기술력을 보유한 젊은 인재들의 활발한 창업 유도과 청년 창업 활성화로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 잠재력 확충

지원대상기업

- 경영주가 만 17~39세 이하인 창업 후 5년 이내 기술창업기업

우대내용

- 고정보증료: 0.3%p
- 보증비율: 95% (창업 후 1년 이내 또는 기보 보증금액 1억원 이하 기업: 100%)

2 기술창업보증(맞춤형 창업기업)

개요

- 기술력 기반 창업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창업성장 지원제도

지원대상기업

-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으로서 아래 해당기업

분 야	개 념
지식문화 창업	▶ 지식기반 서비스업, 문화콘텐츠산업 영위기업
이공계 챌린저 창업	▶ 대표자가 이공계 출신자(전문가 포함)인 제조업 영위기업
기술경력 · 뿌리창업	▶ 대표자가 만40~59세 이하로서 동업계 경력 10년 이상인 제조업(뿌리산업 포함) 영위기업
첨단 · 성장연계 창업	▶ 산업부의 첨단기술·제품 확인기업(나노융합, 디스플레이 등) ▶ 지식기반 제조업 영위기업 및 혁신성장산업 영위기업 ▶ 중기부 창업지원사업 선정자 및 선정기업(선정일로부터 2년 이내)

우대사항

- 보증료: 창업 후 3년 이내 0.4%p 감면, 창업 후 7년 이내 0.3%p감면(1억원까지 1.0%p고정)
- 보증비율: 90%(창업 후 1년 이내 100%)

사업화 가능한 숙련된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대·중견 및 중소기업 기술경력 창업자의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

대상기업

● 일반창업

- 경영주가 신청기술 분야 5년 이상의 대·중견기업 기술경력(연구기술 또는 생산기술 분야) 보유 중인 자로, 아래 요건*을 하나 이상 충족하는 기업
- 경영주가 25년 이상의 중소기업 동업종 경력을 보유한 창업기업

● 스핀오프(Spin-off)창업

- 경영주가 아래 요건*을 하나 이상 충족하는 대·중견기업 스핀오프(Spin-off) 창업기업으로 대·중견기업으로부터 우수기술(예비)창업기업 추천을 받은 기업
- 중기부의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으로 선정 및 지원이 확인된 사내벤처팀의 스핀오프(Spin-off) (예비)창업기업으로서, 경영주가 해당 사내벤처팀의 구성원인 경우

* 대·중견기업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자로서, 창업예정인 예비창업자

* 창업기업으로서, 실제경영자가 대·중견기업 퇴직한 자인 기업

우대사항

- 보증비율: 100%(창업 후 1년 초과 시 95%)
- 보증료: 0.7%p감면(1억원까지 1.0%p 고정보증료를 적용)
- 스핀오프(Spin-off)창업기업의 경우, 사전한도 부여가능
- 보증연계투자 지원 대상기업으로 우선 추천
- 기술 경영컨설팅 지원 등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TEL 1544-1120

대학, 연구기관, 대기업 연구소 재직퇴직자가 창업한 우수 기술기업에 보증투자 등 금융지원과 컨설팅, IPO 지원 등 비금융자원을 통해 성공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종합지원 플랫폼

대상기업

-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으로서 맞춤형 창업성장분야 해당기업

분 야	내 용
U-TECH밸리 (대학 66개)	▶ 대학의 이공계교수, 석·박사 연구원이 창업한 기업 중 협약 대학의 추천을 받은기업 또는 기금이 선정한 기업 ▶ 퇴직 후 2년 이내인 자로 협약 대학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이공계 교수, 석·박사 연구원이 창업한 기업 중 협약 대학의 추천 또는 기금이 선정한 기업
R-TECH밸리 (연구기관 17개)	▶ 연구기관의 이공계 석·박사 연구원이 창업한 기업 중 협약 연구기관의 추천을 받은 기업 또는 기금이 선정한 기업 ▶ 퇴직 후 2년 이내인 자로 협약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이공계 석·박사 연구원이 창업한 기업 중 협약 연구기관의 추천 또는 기금이 선정한 기업
M-TECH밸리	▶ 퇴직 후 2년 이내인 자로 협약 대기업연구소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이공계 석·박사 연구원이 창업한 기업으로서 협약 대기업의 추천을 받은 기업 또는 기금이 선정한 기업

우대사항

- 보증비율: 90%(창업 후 1년 이내 100%)
- 보증료: 0.5%p 고정보증료율 적용
- 사전한도로 기업당 최고 30억원 이내(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 한도운용기간: 승인 후 3년 이내
- 투자지원, 기술 경영컨설팅 지원 등

9 4차산업혁명 분야 보증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기술, 기업 육성을 위해 혁신성장 산업혁명 관련 사업(기술) 영위기업을 우대 지원

대상기업

분 야	내 용
인더스트리4.0 퍼스트보증	▶ 정부추진 6대 핵심분야(Data, Network, AI,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기술) 영위기업 ■ (핵심기업) 기술사업평가등급 BBB이상 ■ (일반기업) 기술사업평가등급 B이상
4.0스마트팩토리 보증	▶ 제조업 혁신 추진을 위한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도입 및 공급기업(예정포함) ■ (도입기업)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가 확인된 도입기업(신청기업 및 기선정기업 포함), 스마트공장 구축수준 확인기업 ■ (공급기업)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기업, 정부의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인정기업

지원내용

분 야	주 요 내 용	우대사항
인더스트리4.0 퍼스트보증	▶ 기존 상품 대비 지원조건 및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우수기술을 보유한 핵심기업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	• 보증비율 : 핵심기업 95%, 일반기업 90% • 보증료 : 핵심기업 0.3%p, 일반기업 0.2%p 감면
4.0스마트팩토리 보증	▶ 스마트공장 정부 보급사업 전 과정에서 '도입기업' 과 '공급기업' 모두를 대상으로 지원	• 보증비율 : 도입기업 90~100%(구축 수준별 차등적용) 공급기업 90% • 보증료 : 도입기업 0.3~0.7%감면 (구축 수준별 차등적용) 공급기업 0.2%p 감면

신청방법 및 절차

- 기술보증기금 영업점에 문의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TEL 1544-1120

사업목적

- 고용 없는 성장 장기화로 일자리 문제해결이 시급한 상황을 고려하여 일자리 양과 질을 확대하기 위한 우대 지원

사업개요

- ‘굿잡보증’은 중소기업의 고용환경을 고려하여 3가지*로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 특성에 맞는 요건을 설정하여 지원

* 고용창출(점핑잡, Jumping Job), 고용배려(쉐어링잡, Sharing Job), 고용유지(베스트잡, Best Job)

분 야	대 상 기 업
고용창출 (Jumping Job)	▶ 1년 전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 20% 이상 고용 증가
고용배려 (Sharing Job)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근 1년 이내 2명이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 (여성고용) 최근 1년 이내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
	▶ (지방고용) 지방소재 중소기업으로 과거 1년 전 대비 3명 이상 고용 증가
	▶ (장애인고용) 최근 1년 이내 장애인 고용
	▶ (마이스터고 등 고용) 최근 1년 이내 특성화고 또는 마이스터고 졸업자 고용
고용유지 (Best Job)	▶ (일자리안정자금) 최근 1년 이내 2명 이상 일자리안정자금 수혜
	▶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고용을 유지

우대사항

우 대 내 용	고용창출	고용배려	고용유지
운전자금 사정한도 우대	150%	120%	120%
보증비용, 보증료감면	95%, 0.4%p		90%, 0.3%p

신청방법 및 절차

- 기술보증기금 영업점에 문의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TEL 1544-1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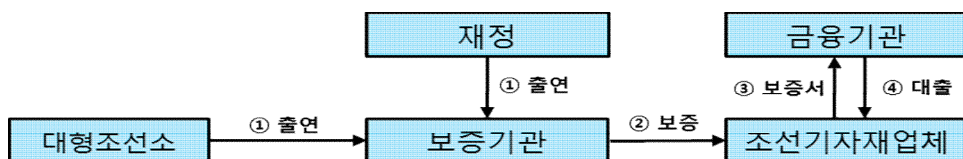
11 조선기자재업 제작금융 특례보증

사업목적

- 일감확보에도 불구하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선기자재업체에 제작금융을 지원하여 경영안정을 도모

사업개요

- ‘조선사-기자재업체-정부’ 상생프로그램 신설을 통한 기자재업체 보증지원 방안마련



- 대상기업 : 조선사와 조선기자재업체와 관련 물품 납품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
 * 납품계약서, 물품공급계약서, 발주서 등을 통해 실제 납품할 상대처, 제품의 상세내역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인정(단순 인력파견의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
- 지원한도 : 기존 보증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업당 30억원 이내
- 보증금액결정 : 계약금액 중 선수금 등 기 수령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보증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산출방법: (계약금액-선수금 등 차감) × 보증비율]
- 보증기한 : 계약서상 납품(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1회 연장가능)
- 보증총한도 : 250억원(추가출연 시 5배수 증액)
- 운용기한 : 한도소진 시까지

우대사항

- 보증비율 : 90%
- 보증료 : 0.3%p 감면
- 심사기준완화(연체대출금요건 완화, 4대보험 체납정보 보유사실요건 완화)
- 기타 : 신용보증기금과 본건 특례보증 중복지원은 불가

신청방법 및 절차

- 기술보증기금 영업점에 문의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TEL 1544-1120

12 소셜벤처(S-Venture) 임팩트 보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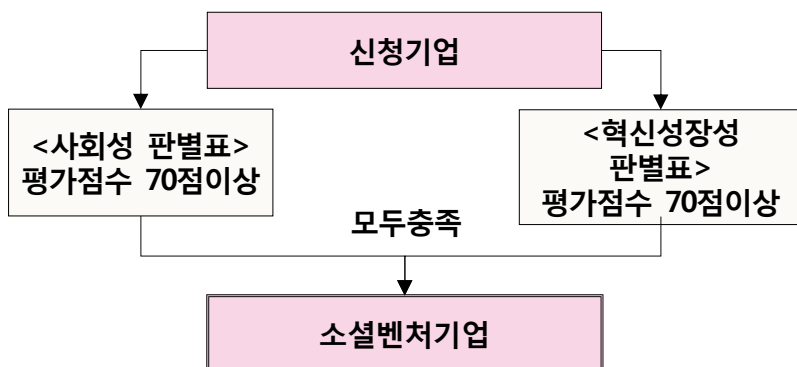
사업목적

- 사회적경제의 한 분야로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성과를 동시에 창출하는 소셜벤처 기업*에 대한 우대보증제도 마련

* 소셜벤처(Social-Venture) 기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재화·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 사회적 기여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혁신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성과를 동시에 창출하는 기업

사업개요

- 대상기업 : 소셜벤처기업 판별표에 따른 사회성 및 혁신성장성 판별표에 의한 평가 점수가 각각 70점 이상인 기업



- 기술평가 : 기보의 소셜벤처기업평가모형 적용

우대사항

- 보증비율 : 100%
- 보증료 : 0.5%p 감면
- 심사기준완화(신용도 유의기업, 재무등급 적용 완화)

신청방법 및 절차

- 기술보증기금 영업점에 문의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TEL 1544-1120

13 R & D보증

개요

- 아이디어 단계부터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전주기에 걸친 R&D금융 매칭을 통해 체계적인 R&BD(Research & Business Development, 사업화연계기술 개발)금융 지원

구분	개발단계	사업화단계
대상자금	연구개발자금, 개발완성자금	사업화 및 양산자금
평가방법	개발과제의 사업화타당성 및 심층적인 경제성 분석	개발완료과제의 기술사업타당성 분석
적용모형	R&D평가모형	KRTS모형

개발단계

- 지원대상 : 개발단계로 동 기술 관련 정부지원금 수혜 또는 신청 사실이 없는 기술
- 대상자금 : 신청일 현재 2년 이내 개발 종료되는 과제로, 신청기술 관련 개발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작간접적으로 소요되는 연구개발자금 및 디자인, 시제품 제작 등 개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소요되는 개발완성자금
- 선정기준 : R&D평가표에 의한 평가등급 “B” 이상이고, “경제성이 인정(NPV>0)” 되는 과제
- 평가비용 : 80만원(VAT 면제). 다만, 보증신청금액 3억원 미만으로 경제성 분석이 생략되는 경우 20만원(VAT 면제)

사업화단계

- 지원대상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에 대하여 R&D 체크리스트(사업화단계)를 충족하는 기업
 - 개발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의 기업자체 R&D 과제
 - 최근 3년 이내 개발성공 판정을 받은 정부출연 R&D 과제
 - 최근 3년 이내 기술이전을 받은 공공연이전 R&D 과제
- 대상자금 : 개발완료 과제의 사업화 또는 제품양산에 필요한 운전 또는 시설자금
- 선정기준 : 기술평가등급이 “B” 이상
- 평가비용 : 20만원(VAT 면제)

우대내용

- 보증료율 감면 : 0.3%p
- 보증비용 : 개발단계 95%(창업 후 7년 이내 100%), 사업화단계 85%(정부출연 R&D과제 95%)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TEL 1544-1120

14 지식재산(IP) 평가보증

시행배경

- 제도개요
 - 지식재산(IP)의 가치평가와 보증을 연계하여 지식재산(IP) 기반한 사업화 지원
- 대상 지식재산(IP)
 - 기술 성숙도가 '제품화완료', '양산준비', '양산' 단계에 있는 아래의 지식재산

-산업재산권	특허권, 심사청구된 특허출원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저작권	문학예술분야 창작물에 대한 권리
	저작인접권	실연가·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의 권리
-신지식재산권	산업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첨단산업재산권	반도체설계, 생명공학기술
	정보재산권	데이터베이스, 영업비밀, 뉴미디어
-임치된 지식재산	우리기금 또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에 임치된 지식재산	
-그 밖에 영업점장이 지적창작물로서 권리성 가치를 인정한 지식재산		

- 대상기업
 - 대상 지식재산(IP)을 개발 완료한 후 사업화하고 있는 기업으로 기술사업평가등급 'B등급' 이상
- 지원금액
 - 지식재산(IP)의 가치를 평가하여 기술가치평가금액을 산출하고, 산출된 가치금액 범위 내
- 기술평가료
 - 작성되는 기술가치평가서 종류별로 2백만원~5백만원
- 우대내용
 - 보증비율 90% ~ 95% 적용
 - 보증료 0.3%p ~ 0.5%p 감면
 - 금융기관과 협약에 의한 보증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평가료 지원
 - 정부부처 평가료 지원사업(중기부 임치기술활용지원사업, 미래부 SW지식재산평가보증, 특허청 특허사업화지원사업)의 경우 정부부처의 평가료 지원
 - 창업 후 7년 이내 중소기업의 경우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기술형창업기업)에 포함되어 은행의 저금리 대출상품 활용 가능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TEL 1544-1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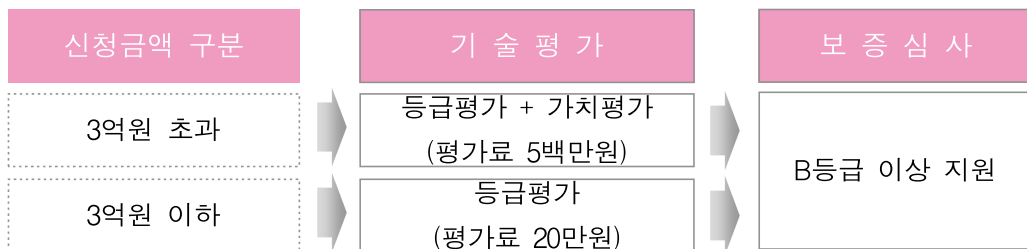
15 지식재산(IP) 인수보증

시행배경

- 지식재산(IP)을 인수·사업화하는 기업의 IP 인수자금을 보증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기술형 창업과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고 기술경쟁력 강화 도모

운용방안

- 제도개요
 - 지식재산(IP)의 인수·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 지식재산(IP) 도입 및 사업화자금을 지원하는 보증
- 대상기업
 - 지식재산(IP)*의 사업화를 위하여 매매, 실시권 허락 등의 방법으로 IP 인수(소유권 또는 사용권 취득)를 추진 중이거나, IP인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중소기업
 - *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저작권, 저작인접권), 신지식재산권(산업저작권, 첨단산업재산권, 정보재산권, 신상표권) 등
 - ** 등기(등록)를 요하는 경우 등기(등록)일, 등기(등록)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일
- 대상자금
 - 인수부터 사업화까지 전 단계(인수자금*-기술완성화자금**-양산자금)에 소요되는 운전 또는 시설자금
 - * 지식재산 매매의 경우에는 매매대금, 실시권 허락의 경우에는 기술료
 - ** 기술인수 후 추가 개발자금 및 시제품 제작자금
- 지원절차
 - 전체 신청금액 중 인수자금 신청금액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 기술가치평가 병행 실시



- 우대내용
 - 보증비율 95% 적용
 - 보증료율 0.3%p 감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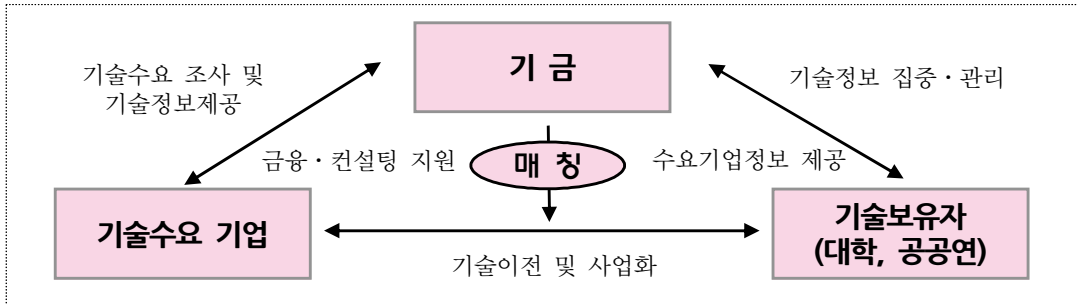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TEL 1544-1120

16 기술이전 · 사업화 지원

개요

- 대학, 연구소 등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하고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재산권 거래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술이전 중개자로서 기술보유자, 기술수요자간 기술거래 알선 및 협상과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기술금융을 통해 One-stop으로 지원하는 제도



기술이전 중개 절차 및 신청방법

- 상담 및 신청 : 전국 모든 영업점 또는 인터넷(tb.kibo.or.kr)을 통해 신청
- 기술수요조사, 예비검토 (기보 기술혁신센터)
 - 도입희망기술에 대한 기술수요조사, 거래조건, 기술거래 성사가가능성 등 검토
- 기술탐색 (기보 기술혁신센터, 공공연구기관)
 - 기업 · 기술매칭 시스템인 KTMS(Kibo Technology Matching System)을 이용하여 대학, 연구소 등이 보유한 맞춤기술을 탐색하고 그 결과를 신청기업에 제공
- 기술이전 협상 및 계약체결(신청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기보 기술혁신센터, 공공연구기관)
 - 협상전략 수립 후 기술이전조건(거래금액, 계약기간, 계약형태 등)에 대해 협상 · 중재
- 자금지원(기보 기술혁신센터)
 - IP인수보증을 통해 기술이전 · 사업화를 위한 기술료, 추가개발자금, 양산자금을 지원
- 사후관리(기보 기술혁신센터)
 - 기술경영지도 등을 통해 도입기술의 사업화 성공지원
- 기술보증기금 영업점, 기술혁신센터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

*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을 위한 포털인 테크브릿지(URL: tb.kibo.or.kr)를 통해 신청가능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TEL 1544-1120

17 기술신탁

사업개요

- 기금이 중소기업 기술을 신탁 받고, 신탁 받은 기술 Pool을 활용하여 기술거래 활성화 추진

운영방안

- 중소기업은 보유기술을 위탁하고 기술보증기금은 신탁기술을 관리
 - * 기보는 특허권을 위탁한 중소기업을 위해 특허관리, 기술이전중개, 기술분쟁 모니터링 및 대응 등의 서비스를 제공
- 중견·대기업으로 기술이전을 원하는 중소기업이 기보에 기술을 신탁함으로써 기술탈취 없이 기금의 중개를 통해 정당한 대가를 받고 기술이전
- 기존 ①공공연 및 대학의 기술이전에 ②중소기업 기술이전을 병행하여 Two-track으로 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지원



기술신탁의 혜택

- (기술보호) 신탁 받은 특허의 분쟁 발생 시 기보가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함에 따라 기술탈취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 기대 (소송비용은 기업이 전액 부담)
- (TLO*역할 수행) 특허권 연차료 납부 기일관리 및 기술료 징수업무 대행
 - * 기술이전 전담조직으로 연구결과물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기술마케팅을 지원
- (비용절감) 특허권 유지 위한 연차료를 예산범위 내에서 70%까지 지원
 - * 단, 연차료 지원한도는 연간 30만원 한도이고, 신탁기간 연장 시 연차등록료는 기업이 부담
- (기술이전) 신탁기술을 대상으로 기금이 기술이전 중개서비스 지원
- (금융수혜) 기술이전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도 IP인수보증을 통해 지원 가능

신청방법 및 절차

- 기술보증기금 영업점에 문의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TEL 1544-1120

18 투자융선부 보증

사업개요

- 기술력이 우수한 창업기업에 대하여 보증부대출로 Seed Money를 우선 제공한 후, 일정시점 이후부터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기금의 선택으로 보증부대출을 투자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이 부여된 보증

지원규모

- 2020년 260억원(매년 기금업무계획에 따라 변동)

지원대상

- 설립 후 5년 이내 법인기업으로서 기술평가등급 BB등급 이상인 기술혁신선도형 기업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업체당 10억원
- 보증비율 : 전액보증(100%)으로 운영
- 보증료 : 0.5% 고정요율 적용
 - * 단, 옵션행사기한(5년) 도과 후에는 일반 보증요율 적용 및 부분보증으로 전환
- 옵션행사시기 및 방법 : 보증실행 후 3개월 또는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최초 보증실행 후 5년까지 가능
- 투자전환 시 발행되는 신주 : 10년만기 상환전환우선주(RCPS)

제출서류

	구분	자료명	고객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작성서류	▷ 기술사업계획서	▷ 사이버영업점에서 직접 작성 *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 제출도 가능	서식
	준비서류	▷ 주주명부 ▷ 임차계약서사본 (사업장, 거주주택)	▷ 고객이 팩스로 송부 또는 직원이 현장조사 시 준비	-
기금 수집 서류	대법원 등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등기부등본	▷ 기보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 (발급수수료는 기보가 부담)	-
	행정정보	▷ 주민등록등·초본 등	▷ 대표자 본인이 행정정보이용에 사전 동의 ▷ 기타제공행정정보: 산업재산권등록원부, 지방세납세증명	사전 동의서
	금융거래	▷ 금융거래확인서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에 대한 기업체 사전 동의	
	세무회계 자료	▷ 사업자등록증명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 부가세자료	▷ 세무사사무실(또는 신청기업)이 사이버영업점 내 세무회계자료제출센터에서 온라인 제출	사전 동의서

* 양식은 기보 홈페이지(www.kibo.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가능

처리절차

단계별	취급자	주요내용
보증신청	신청기업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신청 (영업점 방문 또는 전화 신청도 가능)
상담	영업점 평가담당자	고객과의 상담결과에 따라 보증금지·제한 해당여부, 기술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속진행 여부결정, 절차안내
기술사업계획서 제출	영업점 평가담당자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 (여타 필요서류는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이 직접 수집)
기술평가	영업점 평가담당자	신청기업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예비검토 후 현장평가 실시하여 기술개발 능력, 제품화 능력, 사업성 등을 평가
심사·승인 후 보증서발급 (투자옵션계약 체결)	영업점 심사 및 평가담당자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승인 시 투자옵션계약 체결 및 보증약정 후 보증서 발급
투자옵션 행사여부 심사 및 신주발행	영업점/투자팀	보증지원 기업 중 투자 타당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 투자심사 진행 후, 승인된 기업에 대해 보증해지 및 신주발행

신청 · 접수

- 연간 상시접수(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TEL 1544-1120

19 문화산업완성보증

사업목적

- 문화콘텐츠 제작사가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보증서를 발급하여 문화콘텐츠의 성공적인 사업화 견인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문화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문화산업전문회사 포함)
 - 문화콘텐츠는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디지털콘텐츠, 음악, 영화, 방송, 게임, 공연에 한정
- 시행시기 : '09. 9. ~ (연중계속)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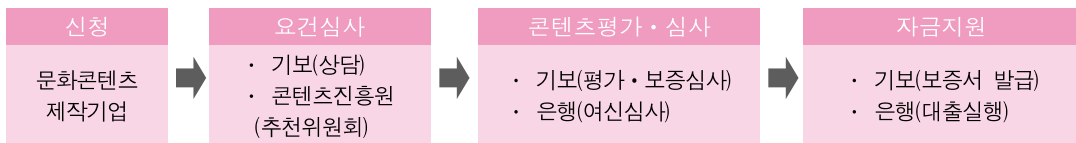
- 보증한도 : 최대 보증한도는 같은 기업당 30억원 이내로 운용
 - 단, 혁신성장 공동기준 문화콘텐츠 분야 중 영화, 방송, 음악, 애니메이션, 캐릭터 분야 영위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한류콘텐츠 제작 중소기업은 50억원
- 보증비율 : 95%
- 보증료 : 콘텐츠 평가등급별 차등 적용하되, 감면요율* 적용
 - * 0.2%p감면, 성과보증료 약정 시 0.1%p추가 감면
- 대출취급 기관 :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수출입은행 등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요건 : 선판매금액 이내 보증신청 여부에 따라 차등화

보증신청금액	대상기업의 요건
선판매금액 이내	• 제작비의 30%이상 자금조달 확정(본건 대출 제외)
선판매금액 초과	• 제작비의 50%이상 자금조달 확정(본건 대출 제외). 단, 기술사업평가등급 A 이상인 경우 제작비의 30% 이상 자금조달 확정
1억원 이하	• 제작비 대비 자금조달 요건 적용 생략 가능

- 지원절차



※ 추천위원회 생략 대상의 경우 기보에 직접 신청 가능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TEL 1544-1120

20 고부가서비스 프로젝트 보증

사업목적

-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우수하고, 산업·기술간 융합 확산을 통해 제조업 등 연관 산업 파급효과가 높은 정보·신기술(ICT)을 포함한 고부가 서비스산업 육성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제조업, 제조관련 서비스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고부가서비스 프로젝트를 제작코자 하는 지식·문화산업 영위기업

지원내용

- 보증한도 : 최대 보증한도는 같은 기업당 30억원 이내로 운용
 - 총제작비 규모 및 콘텐츠 평가등급별 차등 지원 (단, 용역공급계약 체결 이전에는 최대 10억원 이내)
- 대상자금
 - 프로젝트 수행역량을 중심으로 단위 프로젝트의 성공가능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프로젝트 전주기의 제작자금을 지원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방법 : 전국 영업점 및 문화콘텐츠금융센터 상담 및 신청

단계별	취급자	주요내용
보증신청	신청기업	→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영업점 방문 신청
↓		
상담	영업점 평가담당자	→ 고객과의 상담결과에 따라 보증금지·제한 해당여부, 기술 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속진행 여부 결정, 보증진행 절차 안내
↓		
기술사업계획서 제출	영업점 평가담당자	→ 기술사업계획서 등 고객 준비서류 제출 (여타 필요서류는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이 직접 수집)
↓		
기술평가 / 보증심사	영업점 평가담당자	→ 신청기업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예비검토 후 현장평가 실시하여 프로젝트 수행능력, 사업성,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보증서발급	영업점 평가담당자	→ 보증승인 시 보증약정 후 보증서 발급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TEL 1544-1120

21 소재·부품·장비산업 영위기업 특례보증

시행배경

-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등으로 인한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대외 의존형 산업구조를 탈피하고 잠재력 있는 소재·부품·장비산업 영위기업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 지원대상

구 분	소재·부품·장비 업종 강소기업	소재·부품·장비 업종 영위기업*
지원 대상	▶강소기업 100 : 중기부 선정 ▶스타트업 100 : 중기부 선정	▶Tech-Bridge를 통해 기술이전을 받은 소재·부품·장비 업종 영위기업 ▶일본수출규제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재·부품·장비 업종 영위기업 ▶기술력이 양호한 소재·부품·장비 업종 영위기업

* 「소재·부품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재·부품·장비 업종 영위 중소기업

● 우대사항

우대사항 \ 유형	소재·부품·장비 업종 강소기업	소재·부품·장비 업종 영위기업
보증비율	95%	90%
보증료감면	0.4%p	0.3%p
우대한도*	30억원	15억원

* 기보증금액에 불구하고 같은 기업당 본 특례보증 보증금액 기준

- 특별우대(소재·부품·장비 업종 강소기업에 대해서만 적용)
 - (소요자금 사정) 보증금액 사정시 같은기업당 운전자금보증금액 30억원까지는 추정매출액의 1/2로 우대 적용
 - (사정특례) 같은기업당 운전자금보증금액 3억원이하 사정 생략
- 지원규모 : 3,000억원
- 운용기한 : 한도소진 시까지
- 기타 : 신용보증기금과 본건 특례보증 중복지원 불가

신청방법 및 절차

- 기술보증기금 영업점에 문의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TEL 1544-1120

22 벤처기업 확인평가

- 기보는 국내 기술평가 선도 기관으로서 벤처기업 확인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06.6월부터 벤처확인·공시시스템인 벤처인(www.venturein.or.kr)을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가대상 및 요건

벤처유형	벤처요건
기술평가보증기업	• 보증금액이 8천만원 이상일 것(창업 후 1년 미만 기업은 4천만원 이상) • 보증금액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일 것 (창업 후 1년 미만 기업과 보증금액 10억원 이상인 기업은 비율적용 배제) • 기술성 평가 우수(기술평가등급 B등급이상, 기술성 60%이상)
연구개발기업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고,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 신청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총매출액의 5~10% 이상일 것 (창업 후 3년 미경과 기업과 매출액이 없는 기업은 비율적용 배제) • 사업성 평가가 우수할 것(기술평가표 65점 이상)
예비벤처기업	•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 중인 개인 • 기술평가 결과 기술성 우수(기술평가표 65점 이상, 기술성 24점 이상)

※ 벤처투자기업은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서 전담

평가절차

벤처확인신청	인터넷을 통해 신청 - 벤처인(www.venturein.or.kr) 접속을 통해 신청
↓	
접수 및 평가	접수 및 현장평가 진행 - 기술평가보증기업/연구개발기업/예비벤처기업
↓	
평가결과 등록 및 벤처확인서 발급	벤처인에 평가결과 등록 및 벤처기업확인서 발급 - 벤처기업의 요건 검토 후 벤처확인서 발급
↓	
정보공시	벤처인에 벤처기업 정보 공시

평가료 (부가세 별도)

확인평가료		벤처확인 수수료
기술평가보증기업, 예비벤처	20만원	10만원
연구개발기업		

※ 기술평가보증 신규취급 6개월 내 신청 시에는 확인평가료 면제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TEL 1544-1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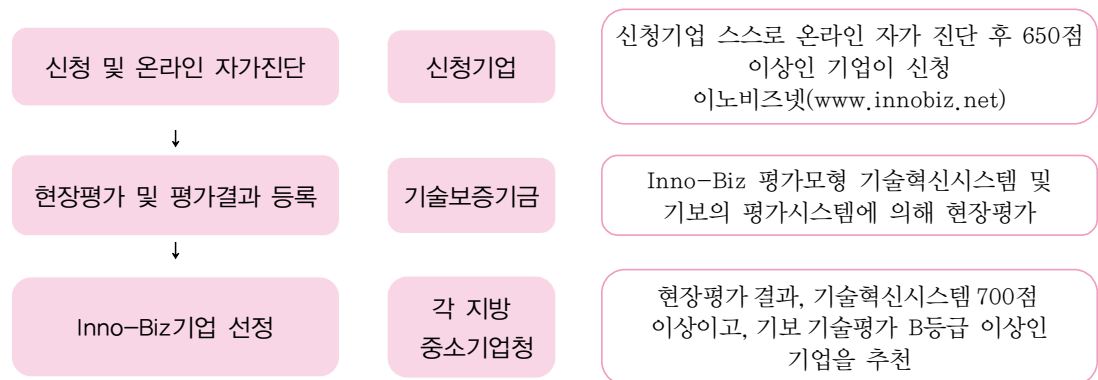
23 이노비즈 인증평가

- 이노비즈(Inno-Biz)란 혁신(Innovation)과 기업(Business)의 합성어로 기술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의미하며, 정부에서는 기술경쟁력과 미래 성장가능성을 갖춘 이노비즈기업에 기술, 자금, 판로 등을 연계 지원함으로써 국제경쟁력 있는 우수기업으로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구 분	내 용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설립 후 3년 이상이며 정상 가동 중인 기업 • 대상분야 : 전 업종(숙박업, 부동산업 등 일부업종 제외)
선정절차	• 자가진단 650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보증기금에서 현장 실사 후 선정
선정기준	• 기술혁신시스템 점수 700점 이상 • 기보의 개별기술평가등급 B등급 이상

평가절차



평가료

- 기술평가료 : 70만원(부가세 별도)
- INNO-BIZ인증평가와 기술평가보증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기술평가보증에 관한 기술평가료는 면제

영업점명	주소 및 연락처	관할구역
부산지점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33(문현동 1228-5) 기술보증기금 별관 1층 051-606-6500	부산시 전역 전국
녹산지점	부산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20 KEB하나은행 녹산공단지점 3층 051-970-0600	부산시 전역 창원시 진해구, 거제시
사상지점	부산시 사상구 학감대로 257 보생빌딩 2층 051-320-3400	부산시 전역
사하지점	부산시 사하구 낙동남로 1422, 청경빌딩 10층 (하단동) 051-250-7808	부산시 전역 거제시
동래지점	부산시 금정구 중앙대로 1925 금정타워 10층 051-510-6900	부산시 전역 양산시
양산지점	경남 양산시 중앙로 33-2, 양산비즈니스센터 3층 055-370-4700	부산시 기장군 울산시 울주군, 양산시
김해지점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342, 아이스퀘어몰 썬1002호(부원동) 055-330-2100	부산시 강서구 김해시, 밀양시

※ 영업점 약도는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 참조 요망

24 기술·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추진목적

-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뿐만 아니라 컨설팅 지원을 통해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위기관리능력 제고
- 분야별 외부전문가와 기술평가를 통해 축적된 내부전문가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신성장동력 창출

지원체계

창업준비 단계	창업초기 단계	성장/성숙단계	위기/재도전단계
창업컨설팅 (벤처창업교실 수료자 대상, 1MD 수행)	진단컨설팅 (예비창업자 사전보증기업 등 대상, 3MD 수행)	전문(심화)컨설팅 (성장·도약기업·재기지원기업 등 대상, 4MD 이상 수행)	진단컨설팅 (경영개선지원 대상기업, 3MD 수행)

- (창업컨설팅) 창업준비 관련 1일 이하 컨설팅
 - 대상 : 기보 주최 벤처창업교실 우수 수료자
- (진단컨설팅) 보증기업의 위기관리능력제고 등을 위해 3일 이하 컨설팅
 - 대상 : 기보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지원기업 및 경영개선 지원 등을 위한 보증기업
- (전문(심화)컨설팅) 보증기업의 성장역량 강화 등을 위해 4일 이상 컨설팅
 - 대상 : 기보 보증기업 등 대상(재기지원보증기업 포함)

25 초기(예비)창업자를 위한 성공창업지원 프로그램

기보벤처창업교실

- 창업분위기 조성을 통한 창업촉진으로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기술창업자 육성 교육
- 기술창업을 준비 중에 있는 예비창업자 대상으로 서울 등지에서 매년 2회 (상·하반기) 개최
- 창업절차, 마케팅/홍보, 세무/회계관리, 사업계획서 작성 등 기술창업 전반에 대한 실무교육 및 우수 교육생을 대상으로 무료 창업컨설팅 실시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TEL 1544-1120

26 보증연계투자

개요

-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술·창업 중소기업에 대하여 보증과 연계하여 직접 투자하는 보증·투자 복합 상품으로, 기술보증기금이 창업초기·R&D·혁신 성장산업 영위기업 등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유가증권을 직접 인수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

투자대상기업

- 보증거래기업 또는 보증과 투자를 함께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다음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의 기술혁신선도형기업
 - * 단,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업과 투자옵션부보증을 투자로 전환하는 기업은 업력 배제
 - 투자심사기준일 현재 보증 승인을 받은 기업 또는 기보증기업
 - 투자용 기술평가등급 TI5등급 이상
 - * 단, 투자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거나, 투자와 보증의 통합한도가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술평가등급 TI4등급 이상이어야 충족
 - 법상 벤처기업 (또는 이노비즈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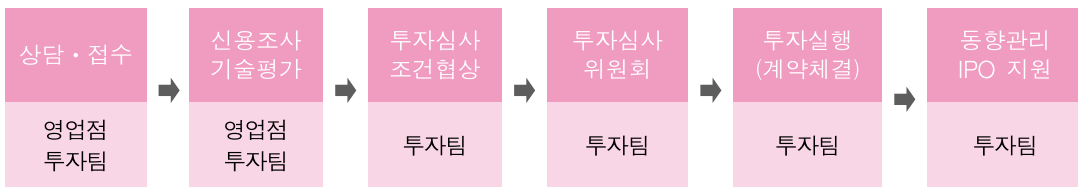
지원내용

- 투자한도 : 업체당 30억원(보증금액 포함 시 100억원)
 - 단, 투자금액은 해당기업에 보증한 금액의 2배 초과 불가
- 투자종류 : 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지원규모

- 2020년 260억원 (매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변동)

처리절차



신청·접수

- 연간 상시접수
 - 기술보증기금 벤처투자센터 투자팀 및 각 영업점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TEL 1544-1120

개요

- 실패하였지만, 우수한 기술력과 건전한 기업가 정신을 갖추고 있어 재기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 채무조정과 신규보증을 지원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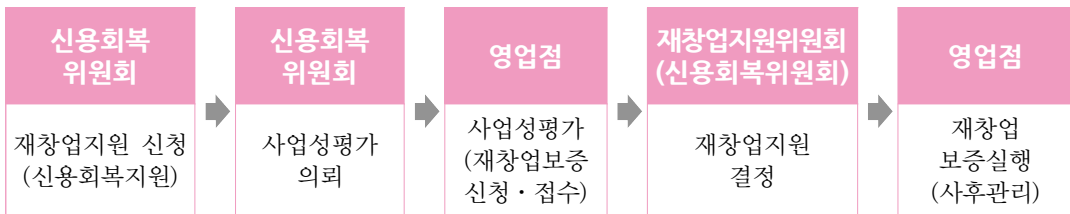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재창업 재기지원보증’과 기보가 직접 지원하는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으로 구분

구 분	재창업 재기지원보증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
주관기관	신용회복위원회	기술보증기금
시행시기	’ 12. 4.	’ 10. 10.
채무자분류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단독채무자
대상기업	실패한 중소기업 경영자가 운영하는 개인, 법인	1) 실패한 기업 2) 재도전 기업주*가 운영하는 기업
주요내용	원금감면(75%) + 신규자금	원금감면(75%)** + 신규자금

* 실패한 기업의 대표자, 실제경영자, 무한책임사원

지원절차

- 재창업 재기지원보증



-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TEL 1544-1120



한국은행 부산본부

1 한국은행 부산본부 중소기업자금 지원제도

지원목적

- 한국은행 부산본부가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 등에 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에 중소기업자금을 저리로 지원함으로써 지방 중소기업의 자금 가용성 확대 및 이자부담 경감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지원규모 : 7,579억원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앞 대출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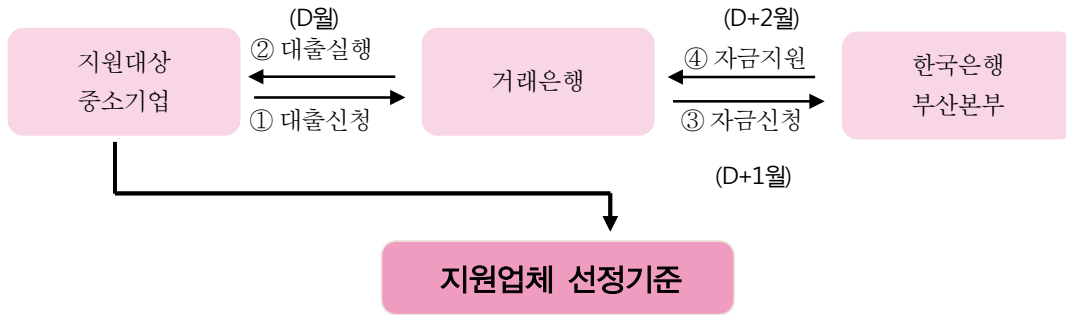
지원대상대출

- 부산광역시 소재 금융기관이 서울특별시 이외 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대하여 취급한 만기 1년이내의 운전자금대출
- 서울특별시 소재 금융기관이 부산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대하여 취급한 만기 1년이내의 운전자금대출

지원한도

- **전략지원부문**(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 농림수산업 관련기업)
: 업체당 20억원 이내(금융기관 대출액 기준 40억원)
* 부산광역시 소재 기업에 한함
- **특별지원부문**(경기부진 및 경기민감 업종 영위기업)
: 업체당 10억원 이내(금융기관 대출액 기준 20억원)
* 금융기관 취급기간 : 2019.9.1. ~ 2021.8.31.(2년간 한시적 운용)
- **일반지원부문**(전략 및 특별지원부문을 제외한 전 부문)
: 업체당 7.5억원 이내(금융기관 대출액 기준 15억원)
- **지원기간** : 1년 이내 (연장가능)
- **금 리** : 연 0.75%*
*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지원하는 대출금리**로 금융기관은 한국은행으로부터 저리로 자금을 조달받아 한국은행의 중소기업자금 지원제도에 부합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시장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

지원절차



부 문 별	대 상 업 체
벤처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 해당업체(창업후 7년 초과 기업에 한함)
혁신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제13조에 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창업후 7년 초과 기업에 한함)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조업 영위기업으로서 창업후 7년 초과 기업에 한함) - 신기술(NET) 또는 신제품(NEP) 마크 획득업체 (창업후 7년 초과 기업에 한함)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 참여업체 (창업후 7년 초과 기업에 한함)
녹색기업	- 아래의 해당 업체중 제조업(KSIC 10~33) 및 수도·하수및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KSIC 36~38)을 영위하는 기업 (창업후 7년 초과 기업에 한함) ○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에 의한 환경표지 인증제품 생산업체 ○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제18조에 의한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생산업체 ○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제16조의2에 의거 환경부가 선정한 녹색기업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이 인증한 GR마크(우수재활용제품 인증)가 부여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지역특화산업 영위기업 (부산광역시 소재기업)	- 아래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창업후 7년 초과 기업에 한함) ○ 운수 및 창고업(KSIC 49~52) (단,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에 해당하는 업종, 육상 여객 운송업(KSIC 492), 외항 및 내항 여객운송업(KSIC 50111, 50121), 주차장 운영업(KSIC 52915)은 제외)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 (부산광역시 소재 기업)	- 아래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KSIC 30) ○ 선박 및 보트 건조업 (KSIC 311) ○ 도로화물 운송업(KSIC 493) ○ 해상운송업(KSIC 501) (단, 외항 및 내항 여객운송업(KSIC 50111, 50121)은 제외) ○ 화물취급업(KSIC 5294) ○ 정보통신업(KSIC 58~63)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KSIC 70~73) (단, 법무,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KSIC 711, 712), 회사본부(KSIC 7151), 수의업(KSIC 731)은 제외)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ICT(정보통신) 및 CT(문화콘텐츠) 업종 영위기업임을 확인하고,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을 제공한 기업

부 문 별	대 상 업 체
전입기업	- 타 지역으로부터 부산광역시로 사업장을 이전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창업후 7년 초과 기업에 한함)
수출관련기업	-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장이 지정한 수출유망중소기업 (창업후 7년 초과 기업에 한함)
소재·부품 생산기업	-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부품·소재전문 기업(또는 신뢰성인증 기업)
농림수산업 관련기업	-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업체로서 표준산업분류표상 01~03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및 상시근로자수 500인 이하 농림축산업자·농어업법인
명절 및 재해자금 등	- 명절, 자연재해 및 지역경제사정 등을 감안하여 본부장이 자금지원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업체
기타 지원기업	- 지원대상업체 선정기준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재해, 거래업체 부도, 경영악 화 등으로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등 본부장이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 부산광역시로부터 「5대 전략산업별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명예선도 기업 포함) - 부산광역시로부터 「부산 비즈니스서비스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거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사회적기업 -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거 부산광역시가 인증한 예 비사회적기업(비영리 법인·단체는 제외)
경기부진 및 경기민감 업종 영위기업	- 아래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조선업(KSIC 311) ○ 해운업(KSIC 501~502) ○ 음식·숙박업(KSIC 55~56) ○ 도소매업(KSIC 45~47) ○ 여행업(KSIC 752) ○ 운수업(KSIC 49, 51~52) ○ 여가업(KSIC 90~91)

※ 벤처기업·혁신기업·녹색기업·지역특화산업 영위기업·전입기업·수출관련기업 중 창업후 7년 이내 기업은 한국은행(본부)의 “신성장·일자리지원프로그램”의 창업자금 이용 가능

문의처 : 한국은행 부산본부 (TEL 051-240-3912) 및 각 금융기관 대출담당



대한상사중재원 부산지부

1 법적구속력을 갖는 중재제도로 신속·공정한 분쟁해결

중재제도의 개요

- 중재의 정의 : 당사자간의 서면합의로 사법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중재법 제3조)
- 대한상사중재원 : 중재법에서 정부가 지정한 유일한 중재기관으로 대법원의 제·개정 승인을 받은 중재규칙으로 중재절차를 관리하는 비영리공익기관
- 중재의 장점(소송 대비)
 - ① 신속한 법적해결(단심제로 일반절차 평균 8개월-국내 8개월, 신속절차 4개월)
 - ②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도 강제집행 가능(뉴욕협약으로 외국에서도 강제집행 보장)
 - ③ 저렴한 중재비용(2억원 이하 소송 대비 55%까지 저렴, 변호사 선임자율)
 - ④ 전문가를 당사자의견에 따라 중재인으로 선임 가능(전문분야 분쟁해결에 효율적)
 - ⑤ 거래기밀유지, 당사자 명예손상방지(중재절차 비공개)
 - ⑥ 당사자합의에 따른 합리적인 절차진행과 충분한 변론기회 제공
- 중재판정의 효력 : 중재판정은 당사자간에 있어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중재법 제35조)

중재합의의 방식

- 사전 합의 : 계약체결시 계약서식에 중재조항을 포함하는 방식(추천)
- 사후 합의 : 분쟁발생 후에 중재절차에 관하여 합의하는 방식으로, 양 당사자 간의 감정적 태도로 인해 중재합의 곤란(비추천)

중재합의의 요소

- 기본 합의요소 : ① 중재지 : 중재절차 진행하는 국가(도시) 선택
② 중재기관 : 중재절차 관리하는 상설중재기관 선택
③ 중재절차(준거법) : 중재절차 규율하는 법령 및 절차규정 선택
- 추가 합의요소 : ① 중재인의 수와 선정방법
: 3인(또는 1인), 당사자 직접 선정(선정권자 지정)
② 중재절차 언어
③ 중재비용의 범위와 부담자
④ 중재판정의 기한과 범위

대한상사중재원의 추천 표준중재조항

- 국내중재조항
“이 계약과 관련한 모든 분쟁은 부산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의 국내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최종 해결한다.”
- 국제중재조항
“Any disputes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in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또는 “Any dispute, controversy or claim arising under, out of or relating to this contract (including non-contractual claims) and any subsequent amendments of this contract,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its formation, validity, binding effect, interpretation, performance, breach or termination, shall be referred to and finally resolved by arbitration under KCAB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which Rules are deemed to be incorporated by reference into this clause.
The number of arbitrators shall be [one / three]
The seat, or legal place, of arbitration shall be [City / Country]
The language to be used in the arbitral proceedings shall be [language]”
- 제3국의 중재기관을 이용하는 방식
만약 제3국의 중재기관을 활용하려는 중재합의를 하였다면 그 중재기관이 권장하는 중재조항을 인용하는 것이 이상적임. 이런 경우 중재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예컨대 국제상업회의소(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부설 국제중재법원(ICA: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을 활용하

기로 하였다면 다음과 같이 표현하면 됨.

"이 계약으로부터 또는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국제상업회의소 중재규칙에 따라서 선임된 1인 또는 그 이상의 중재인에 의하여 동 규칙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해결된다."

" All disputes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shall be finally settled under the Rules of Arbitration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by one or more arbitrators appointed in accordance with the said Rules."

● 유의사항

- ① 상대방 국가 또는 제3국의 중재기관으로 합의해야하는 경우에는 중재인 선정방법과 중재절차 언어를 불리하지 않도록 꼭 반영하는 것이 필요.
- ② 법원의 소송절차와 중재기관의 중재절차를 함께 나열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약정하는 경우 상대방의 소송선택 또는 중재절차 회피의 기회를 주어 신속성 저해.

중재절차도



중재신청서

- 중재신청서의 작성 양식은 대한상사중재원 홈페이지(<http://www.kcab.or.kr>)에서 참조 가능

2

분쟁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현장방문 무료교육

지원목적

- 중재제도 활용 확대를 위하여 기업체, 단체 등 임직원을 대상으로 중재제도에 관한 직무교육 희망시 현장 방문하여 중재제도와 중재원을 통한 분쟁해결방법에 관하여 무료교육을 실시

현장 방문교육 대상

- 사업장별 10명 이상의 대표자 및 임직원 또는 주변의 다수 사업장에서 10명 이상 참석이 가능한 경우 1~2시간 강의를 위한 강사 파견 및 교재제공 무료실시
- 강의 일시는 요청 사업장과 출장 강사의 사전협의로 조정 가능
- 교육 후 사업장의 활용 계약서 검토 및 발생분쟁에 대한 상담 가능

현장 방문 무료교육 신청

- 중재제도 현장방문 교육신청서(공문)상 기재항목
 - ① 희망기업체명 및 주소
 - ② 참석 인원 수
 - ③ 강의희망일시 및 시간
 - ④ 강의장소
 - ⑤ 활용계약서 자문 및 분쟁상담 희망 여부
 - ⑥ 담당자 직책, 성명 및 전화번호
- 교육신청서(공문) 접수
 - ① 부산·울산·경남지역 :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40, 52층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대한상사중재원 부산지부(팩스 : 051-441-7039)
 - ② 부·울·경 이외 지역 :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1, 43층 (삼성동) 대한상사중재원 홍보교육팀(팩스 : 02-551-2020)

교육과정 강사추천

- 관공서, 경제단체 및 사회교육기관의 계약서 작성 및 분야별 분쟁사례 교육프로그램에 강사추천
- CEO 대상의 교육과정 내지 CEO 소모임 특강 요청 적극 수용

3 당사자간 타협을 통한 분쟁해결 무료알선

지원목적

- 분쟁 발생시 당사자 상호 감정적인 대응으로 분쟁해결이 지연되어 거래중단과 손실 확대는 물론 민사·형사 소송을 이용할 때 많은 시간과 경비를 지출하게 되므로 사전에 대한상사중재원의 중립적으로 공정한 개입으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조언과 권고를 통하여 당사자 간 합의로 해결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알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여 민사·상사 분쟁해결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건전한 거래를 활성화함

무료알선의 유형

- 국내알선 : 양당사자가 국내의 개인, 기업체, 지방자치단체, 정부인 국내알선사건
- 대외알선 : 국내의 당사자가 외국의 당사자를 상대로 신청하는 국제알선사건
- 대내알선 : 외국의 당사자가 국내의 당사자를 상대로 신청하는 국제알선사건

알선신청 및 알선절차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대한상사중재원 홈페이지(www.kcab.or.kr) 온라인신청서 작성
우편, 팩스 접수 :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40, 52층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대한상사중재원 부산지부(팩스 : 051-441-7039)
- 알선신청서 작성서식(국제알선은 국문과 영문으로 별도 작성)

알선신청서

- ① 제 기 자 : 상호, 대표자 및 담당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 ② 피제기자 : 상호, 대표자 및 담당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 ③ 거래경위 및 분쟁내용 : 쟁점위주로 요약
- ④ 희망하는 해결방안 : 청구금액(권리), 이행시기 등 구체적으로 요약
- ⑤ 입증자료 : 거래 및 손실(청구)내역 자료와 증거목록 명시
- ⑥ 제기자 기명 날인(서명)

- 알선절차 : 2개월 범위 내(국제알선 3개월 범위 내)에서 쟁점확인 및 합의권유

- 알선 합의성공률 : 국내알선 약 50%, 대내알선 약 40%, 대외알선 약 15% 수준임

주요 활용사례

- 물품거래 : 물품(용역)대금청구, 물품하자배상청구, 납품이행청구, 인수거절배상청구
- 대리점거래 : 커미션청구, 독점대리점계약위반배상청구
- 운송거래 : 운송지연손실청구, 운송물품손상배상청구, 적하보험금청구
- 투자거래 : 이익배당청구, 투자지분정산청구, 합작(기술)투자계약위반배상청구
- 산업재산 : 산업재산 소유권(사용권) 양도금(사용료) 청구, 산업재산권침해배상청구
- 건설용역 : 설계변경추가공사비청구, 공사지연지체상금청구, 공사기성고확인정산청구, 공사하자수리이행청구
- 부동산거래 : 공장, 상가, 주택 등의 분양, 매매, 임대차 계약위반청구
- 기타 국내·국제 상거래분쟁

지원목적

- 상담을 통하여 개인, 자영업자 및 기업, 정부와 지자체의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각종 계약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에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상거래 활성화 및 분쟁 관련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를 유도하여 시장질서 확립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

무료상담 이용방법

- 전화상담 : 서울 : (02)551-2000
부산 : (051)441-7032
- 내방상담 : 부산 : 남구 문현금융로 40, 52층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서울 : 강남구 영동대로 511, 43층 (삼성동), 중재원 분쟁종합지원센터
- 인터넷상담 : 대한상사중재원 홈페이지(www.kcab.or.kr) 메뉴
고객센터>문의하기 선택 / 상담자 등록메일계정으로 답신
- 상담시간 : 전화, 내방상담 : 평일 10:00~17:00(점심시간 제외)
인터넷상담 : 24시간 이용가능(통상 근무일 1일 이내 메일 회신)
- 상담범위 : 개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업체 및 정부, 공공기관 간의 국내 및 국제 상거래 분쟁관련 계약조항 및 분쟁발생시 대응방안 및 분쟁해결제도 안내, 대한상사중재원의 알선절차와 중재신청을 위한 중재합의요령과 중재절차 안내
- 상담분야 : 국내 일반상거래, 무역, 합작투자, 기술제휴, 건설, 건축, 조선·해운·물류, 특허, M&A, 방송·정보·통신, 부동산개발, 재건축·재개발, 의료관광, 광고, 엔터테인먼트, 프랜차이즈, 매매, 임대차, 제조, 가공, 수리, 대리, 중개, 운송, 신탁, 보험, 외국인고용 등



부산상공회의소

1 FTA무료방문 교육 및 컨설팅

운영목적

- 원청 및 협력업체에 대한 집합교육을 통한 지역 수출업체 FTA활용 극대화 방안 마련

사업내용

- 사업주관 : 부산상공회의소 부산 FTA활용지원센터
- 사업기간 : 2020. 1. ~ 12.
- 개최횟수 : 수시
- 개최장소 : 신청업체 현장 또는 부산상의 교육장
- 참석대상 : 부산지역 제조 수출업체 및 무역업체(연간 60개 업체)
- 주요내용 :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확인서 작성 등 제반사항 지원
- 총사업비 : 100만원(전액 국비)
- 강 사 : 부산 FTA활용지원센터내 관세사 활용

업체 지원사항

- 교육비, 자료 제공 등 제반사항 전액 무료 지원
- 원산지확인서 적합성 확인 등 FTA원산지증명서 발급 지원

문의처 : 부산상공회의소 FTA활용지원센터

TEL 990-7125~6

FAX 990-7119

사업목적

- 전년도 수출금액 2천만불 이하 부산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유력 박람회 부산관 단체 참가 및 무역사절단 파견기회 제공을 통해 지역기업의 수출선 다변화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전년도 수출 2천만불 이하 부산소재 중소기업
- 시행시기 : 연중
- 사업비 : 375,000,000원
- 수행기관 : 부산상공회의소 통상진흥본부

지원내용

- 박람회: 부스비 600만원 한도 이내 100%, 운송비 편도 혹은 통역비 100%, 사후간담회비 100%
- 무역사절단: 항공료 왕복 50%(업체당 1인), 바이어 매칭비 및 상담회 개최비 100%, 현지 차량 및 가이드비 100%, 사후간담회비 100%

신청방법 및 절차

- 부산광역시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www.busan.go.kr/trade/index>)에서 희망사업 선택 후 신청

문의처 : 부산상공회의소 통상진흥본부 TEL 990-7085~6 FAX 990-7099

3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사업목적

-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게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기업에는 우수 청년인력확보 및 인건비 지원

지원내용

- 2년형
 - ▶ 기업: 채용유지지원금 450만원 지원
(400만원은 근로자 자산형성에 기여, 50만원 기업 직접 수령)
 - ▶ 청년: 청약승낙일로부터 2년 만근 시 1,600만원 수령
- 3년형(※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기업만 가능)
 - ▶ 기업: 채용유지지원금 670만원 지원
(600만원은 근로자 자산형성에 기여, 70만원 기업 직접 수령)
 - ▶ 청년: 청약승낙일로부터 3년 만근 시 3,000만원 수령

신청자격

-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 벤처기업 등 일부 사업장 1~5인 미만 기업 가능
- 청년 : 만 15~34세 이하 청년으로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정규직 채용일 6개월 이내 청약신청까지 완료(기간 초과자 참여 불가)

지원기간

- 청약승낙일로 2~3년

문의처 : 부산상공회의소 일자리사업본부

TEL 990-7071~4

4 부산청년 파란일자리(부산 청년취업 인턴) 사업

사업목적

- 부산청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지역의 중소기업 인턴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장 경력을 형성케 하고, 정규직으로 취업 가능성 제고 및 부산소재 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

지원내용

- 부산소재 기업에서 부산청년을 인턴으로 신규채용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인턴 기간 인건비 지원(최대 월150만원, 3개월)

신청자격

- 참여기업
 - 부산소재 중소·중견기업으로 청년인턴(정규직전환조건)을 신규채용하는 기업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일부 업종에 한해 참여가능)
 - 인턴 약정임금 중 일부(최소20%이상) 부담 가능한 기업
 - 인턴채용 이전 1개월 이내 인위적 감원이 없는 기업
 - 최저임금 준수 및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등 사업지침에 결격사유가 없는 기업
- 참여청년
 - 신청일 현재 부산거주, 만18세~34세 이하의 청년 (군필자 군복무 비례적용: 최고 만39세)
 - 인턴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인턴채용예정 기업에서 근무하지 않은 청년
 - 고등학교 및 대학 재학생·휴학생 참여불가 (단, 방송·통신·사이버·야간학교 재학생은 참여가능)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관계자 불가

진행절차

- 운영기관(부산상공회의소) 상담 및 신청
- 사업 참여기업 선정 후, 인턴지원 협약 체결(부산상공회의소-기업)
- 인턴 선발자 명단 통보 및 표준인턴약정서 사본 제출(기업-인턴)
- 인턴의 정규직 근로계약 체결 후, 인턴지원금(최대 3개월) 일괄 신청

문의처 : 부산상공회의소 일자리사업본부

TEL 990-7012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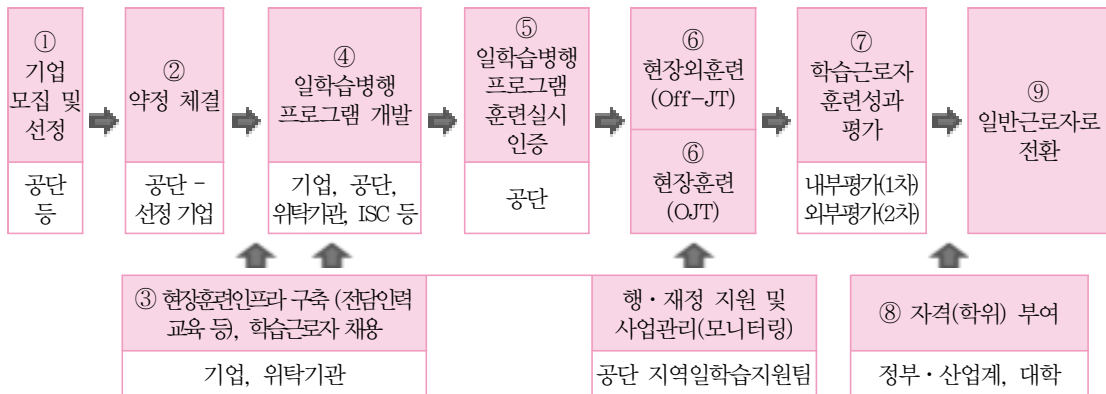
1 일학습병행

추진목적

- 기업이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형 인재를 양성·활용하기 위해 구직자를 근로자로 채용하여 일을 담당하게 하면서 학습(현장훈련 등)을 하는 새로운 교육훈련 제도로 고용률 제고,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 및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함

사업내용

【일학습병행 프로세스】



- 훈련기간 : 1년 ~ 4년
- 기업선정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공동훈련센터형은 20인 이상)으로 CEO의 인력양성의지가 높은 기업
- 훈련대상 : 15세 이상의 신규 근로자 (1년 미만 입사자로 해당분야 훈련수행이 가능한 근로자)

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우리나라의 학교중심 직업교육과 스위스의산업현장중심 도제식 직업교육의 강점을 접목한 새로운 직업 교육모델로서 고교단계 일학습병행 교육훈련 제도
- IPP(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형 일학습병행
기업이 원하는 대학생을 근로자로 채용하여 학교 등 교육기관과 함께 일터에서 체계적인 훈련을 제공하고, 국가가 평가하여 자격(학위)으로 인정하는 제도

업체 지원사항

- 기업현장교수 지원 : 연간 400만원 ~ 1,600만원
- HRD담당자 지원 : 연간 300만원 이내
-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학습도구 개발 지원 : 훈련과정 당 과정개발비 150만원, 학습 도구개발비 80만원(최대 3개 과정)
- 기업의 인건비 부담 지원 : 학습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종료 시 외부평가 합격자 1인당 [월 20만원 × 훈련기간] 일괄지급
- 훈련비용 지원 : 훈련단가 × 훈련시간 × 인원 × 지원율(50~240%)

학습근로자 지원사항

- 조기취업 후 임금을 받으며 교육훈련 기회 제공
- 교육훈련과정 수료 시 자격 또는 학위 부여
- 외부평가 합격 시 일반근로자로 전환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	TEL 051-330-1826~8 FAX 051-333-3751
〈듀얼공동훈련센터〉	
대한상의 부산인력개발원	TEL 051-610-6782
현진소재 미래교육원	TEL 051-602-7877
한국폴리텍대학 부산캠퍼스	TEL 051-330-7758
한국해양대학교	TEL 051-410-5244
부산과학기술대학교	TEL 051-330-7377
동원과학기술대학교	TEL 055-370-8349
〈전문지원기관〉	
부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TEL 051-990-7057

2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

추진목적

- 지역 기업 및 산업인력수요를 기반으로 맞춤형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중·장년 및 경력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의 훈련참여를 유도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고용률 제고
- 지역 중소기업의 훈련수요를 충실히 반영하여 훈련 참여율을 제고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 및 경쟁력 제고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맞춤형 훈련이 필요한 모든 기업과 구직자
- 사업절차 :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구성 → 지역인력수요조사 → 훈련실시 → 인력채용
※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 사업주단체, SC단체, 지자체, 노동단체 등으로 구성
- 지원방법 : 공동훈련센터를 통한 상시 지원
- 공동훈련센터(2020년 기준)
 - 대한상의 부산인력개발원 : 기계, 전기·전자, 조선설계
 - 한국폴리텍대학 부산캠퍼스 : 기계, 금형, 전기·전자, 자동차
 - 한국해양대학교 : 운전·운송, 해양플랜트
 - 부경대학교 : 건설, 정보통신
 - 부산디자인센터 : 디자인융합

업체지원사항

- 훈련비 전액, 숙식비 월 최대 330,000원, 훈련수당 월 최대 200,000원
- 상시 만남의 장을 통한 인력과 훈련 수요 파악 및 맞춤형 훈련과정 개설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
TEL 051-330-1829 FAX 051-333-3751
부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TEL 051-990-7056

대한상의 부산인력개발원	TEL 051-610-3125
부경대학교	TEL 051-629-5221
부산디자인센터	TEL 051-790-1028
한국폴리텍대학 부산캠퍼스	TEL 051-330-7753
한국해양대학교	TEL 051-410-5238

3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운영목적

-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훈련비 등)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촉진

사업내용

- 훈련실시주체 : 고용보험법상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
- 훈련실시대상 : 15세 이상의 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 훈련지원절차
 - 자체훈련 : 과정인정신청 → 실시신고(확정자신고) → 수료보고 → 비용신청
 - 위탁훈련 : 사업주 위탁훈련과정 수강 및 수료 후 위탁훈련기관이 훈련비용 신청
 - ※ 위탁훈련과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www.hrd.go.kr 참조
- 비용지원요건
 - 출석률 80% 이상 수료자에 한해 비용지원
 - ※ 원격훈련과정의 경우, 훈련기관이 제시한 별도 수료요건을 충족해야 함

업체 지원사항

- 소요되는 비용(훈련비 등)의 일부 지원
 - ※ 표준훈련비 : 훈련직종별 훈련단가 × 훈련시간 × 사업장 규모별 지원요율*
 - * 사업장 규모별 지원요율

	일반직무훈련		법정직무교육
	자체	위탁	
우선지원 대상기업	100%	90%	50%
1,000인 미만 기업	60%(원격80%)		30%(원격40%)
1,000인 이상 기업	40%		20%

※ 공통법정훈련(개인정보보호, 성희롱예방, 산업안전보건교육 등)은 비지원

- 해당연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보험료의 240% 한도(중소기업 기준) 지원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

TEL 051-330-1956

FAX 0502-400-4001

4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지원사업

사업목적

- 오랜 경험과 기술·기능을 보유한 우수 숙련기술인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및 학교·직업 능력개발 훈련기관에 대한 숙련기술전수 등을 통해 기업경쟁력 및 교육현장성 강화
- 고숙련 기술 유출 및 중소기업 경력 단절 방지, 베이비부머 세대 퇴직(예정)자 일자리 창출

사업개요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대상 구분	세부 지원내용
▣ 고용보험법시행령에서 정한 우선지원대상 기업 * 상시근로자 2인 이상 사업장 (HRD분야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 고용보험채납기업 제외	▣ 기술전수(기술애로 지원 등) ▣ 기업진단 및 HRD컨설팅 ▣ 근로자 적합훈련 설계 ▣ 현장훈련지도 등 활동지원 ☞ 기계 등 총 11개 분야별 100시간 한정 ☞ HRD 분야 30시간 한정 ※ 기술 분야의 경우 동일기관 3년 연속 지원 불가 ※ HRD 분야의 경우 동일기관 3년 내 재 지원 불가

지원내용

-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 활용에 따른 비용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전액 제공함에 따라 기업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일체 없음

신청방법 및 절차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

TEL 051-330-1911 FAX 0502-400-4001

사업목적

- 중소기업이 업무관련 지식, 경험, 노하우를 사업장 내에서 체계적으로 축적, 공유, 확산할 수 있도록 학습활동 및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기업경쟁력 제고 도모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지원제외업종 : 공공기관 및 비영리 사업자, 숙박업·부동산업·서비스업 등
- 사업기간 : 연초 사업공고를 통해 모집 후 1년 단위 활동, 최대 3년까지 지원 가능

지원내용

- 학습조 활동비, 학습리더 및 조장 교육비, 수당 지원
- 사내 우수 학습조 경진대회 지원(신규기업 100만원, 계속기업 200만원)
- 학습기업간 학습네트워크 활동비 지원(기업당 100만원)
- 외부전문가 컨설팅 지원(최대 300만원)
- 우수 학습기업 대상 학습인프라 장비 구축비용 지원(최대 2,000만원)

기타 참고사항

- 월 2회 이상 학습활동 후 학습일지를 작성하여 학습관리시스템에 등재
- 전용카드 발급을 통해 지원금집행
- 지원유형에 따라 기업의 대응투자가 이루어져야함
- 지원금 60%를 사전지급하고, 사업종료 후 성과평가 및 회계정산을 통해 사후지원금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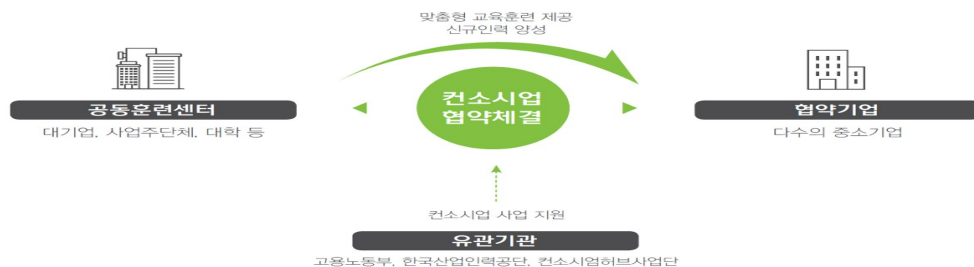
6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목적

- 기업, 사업주단체 등이 다수의 관련 중소기업과 공동훈련 협약(컨소시엄)을 맺고 기관이 보유한 훈련·연수 시설 등을 활용하여 협약을 맺은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에게 맞춤형 훈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공동훈련에 필요한 훈련 인프라와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재직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고용보험 미적용자
- 시행시기 : 1월~12월
- 수행기관



- 공동훈련센터 현황
 - 르노삼성자동차(주), 만디젤엔터보코리아(주), 한진중공업(주), 현대해양서비스(주), 한국선급, 현진소재(주), (주)마린서비스,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재)부산경제진흥원 신발산업진흥센터
 - ※ 관련산업분야 중소기업은 상기 공동훈련센터와 협약체결 후 훈련참여 가능

지원내용

- 공동훈련센터(대기업, 사업주단체 등 훈련을 운영하는 기관)
 - 운영비(전담자 인건비+일반운영비) : 4억원 이내(20% 자부담)
 - 훈련시설·장비비 : 15억원 이내(20% 자부담)
 - 프로그램개발비 : 1억원 이내
 - 훈련비용지원 : 출석률 80% 이상 수료자에 한해 비용지원
- 협약기업(공동훈련센터와 협약을 맺은 중소기업)
 - 공동훈련센터가 개설한 프로그램에 한해 무료로 훈련 참여 가능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 TEL 051-330-1903 FAX 0502-400-4001
 남부권역컨소시엄허브사업단 053-810-1560



산업통상자원부 기업활력법 활용지원센터

1 기업활력법

사업목적

- 기업이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규제 개선
- 사업재편을 통한 기업의 활력과 산업 경쟁력 제고, 산업구조의 고도화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신산업 진출기업, 공급과잉업종 기업, 산업위기지역 내 기업
 - * 국내 정상기업(법인에 한함)
 - * 개인사업자, 법정관리/워크아웃 기업은 제외
- 시행시기 : 2019.8 ~ 2024.8 (5년 한시 특별법)
- 수행기관 : 기업활력법 활용지원센터

지원내용

- 상법 및 자본시장법 특례
 - ①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이사회 결의로 대체
 - ② 주주총회 관련 기간 단축
 - ③ 주식매수청구에 따른 주식매수 의무기간 연장
- 공정거래법 특례
 - ① 지주회사 규제 유예 : 부채비율/지분비율/공동출자 규제
 - ② 대기업집단 규제 유예 또는 유예기간 연장
 - ③ 기업결합심사 합리화
- 세제 지원
 - ① 양도차익 과세이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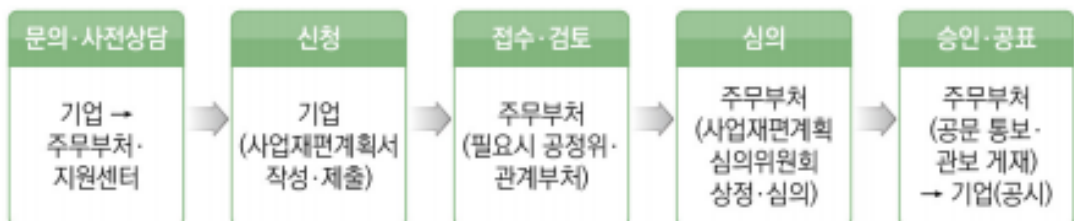
- ② 채무면제이익 과세이연
- ③ 등록면허세 감면
- ④ 적격합병 기준 완화
- ⑤ 관세 납부부담 완화
- ⑥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확대

- 지역 투자 촉진 보조금 요건 완화
- 산업단지 용지 처분 특례
- 금융 지원 : 사업재편 우대보증, 사업경쟁력강화 지원자금 등
- 연구개발 지원 : 정부 R&D사업 우대 가점 등
- 고용안정 지원 :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요건 완화 등
- 중소기업용 특별지원
 - ① 중소기업 정책자금(중기청)
 - ② 글로벌 강소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
 - ③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 지원 참여 우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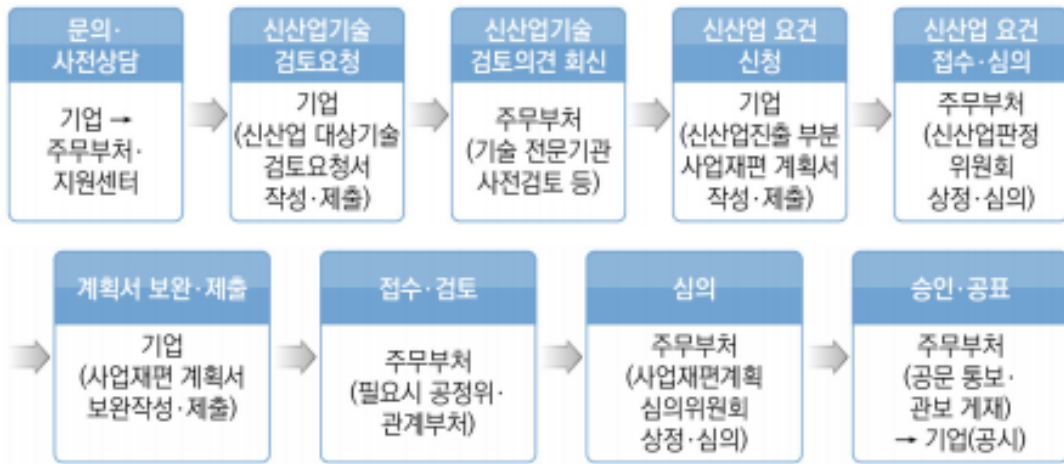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방법 : 기업이 사업재편 계획서를 작성하여 주무부처에 제출

과잉공급업종 기업·산업위기지역 기업



신산업진출 기업



문의처 : 기업활력법 활용지원센터
www.oneshot.or.kr

TEL 02-6050-3161~3, 3831~7



한국노인인력개발원

1 2020년 시니어인턴십사업

사업목적

- 60+에게 기업 근무를 통한 직업능력 강화 및 지속 근무 기회 제공
- 기업에게는 노인 고용에 대한 부담 완화 및 노동시장 내 인력부족 문제 해소

사업개요

- 지원대상 : 4대 보험 가입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및 비영리단체
- 시행시기 : 연중
- 수행기관 : 부산지역 15개소(전국 159개소)

지원내용

- 인턴형 : 인턴기간 3개월 포함 최대 6개월간 222만원(1인당)
- 세대통합형 : 숙련기술을 보유한 고령 근로자를 청년멘토로 고용시 300만원(1인당)
※ 숙련기술을 보유한 60세 이상 근로자를 청년멘토로 고용시
- 장기취업유지형 : 인턴십 참여 후 18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90만원 추가 지원(1인당)

신청방법 및 절차

- 시니어인턴십사업 수행기관 상담 및 신청(1577-1923)
※ 수행기관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지정한 시니어인턴십 사업 운영 기관

문의처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TEL 051-507-6373

FAX 051-507-6376

사업목적

- 만60세 이상 고령자의 경력과 능력을 활용하여 민간영역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고령자친화기업)을 육성

사업유형 및 개요

	기업인증형	모기업연계형	브릿지형
신청자격	업종별 고령자 기준고용률(1~23%)을 충족한 기업중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고령자를 추가고용 할 계획이 있는 기업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직종에서 다수 고령자의 일자리창출이 가능한 자회사를 신규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	지역내 소규모 사업을 운영 및 계획 중인 법인(단체)로 고령자의 일자리창출이 가능한 자회사를 신규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
보조금 지원규모	개소당 최대 2억원 이내	개소당 최대 3억원 이내	1억원
대응투자*	면제	지원 신청액 70% 이상	면제
최소 고용인원	10명	10명~20명	5명
지원항목	사업비(시설투자비, 자산취득비, 홍보, 컨설팅 비용 등) 및 관리운영비		사업비 및 관리운영비, 인건비(보조금의 10% 이내)
자회사 설립형태	해당없음	상법상 회사	상법상 회사, (사회적)협동조합

대응투자

- 참여법인이 「고령자 친화기업」 설립·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현금투자에 한함
- 대응투자 이행완료 확인 후 예산지원(선 대응투자 후 예산지원)

신청방법 및 절차



문의처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TEL 051-507-6375 FAX 051-507-6376

MEMO

2020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발행일 2020년 2월

발행처 부산광역시 일자리경제실 혁신경제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051-888-7691~6

제 작 신흥인쇄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989번길 30-5
051-852-3377



2020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부산광역시, 부산경제진흥원, 부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 게재

부산광역시(일자리경제실 혁신경제과) (051) 888-7691~7696 www.busan.go.kr

부산경제진흥원 (051) 600-1700 www.bepa.kr

부산신용보증재단 (051) 860-6600 www.busansinbo.or.kr
